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2021. 1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21. 10. 6.(수) 13:30~17:41
- ◆ 방 법 : 원격회의
- ◆ 진행순서
 - 안건 심의(총 30건)
- ◆ 상정안건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외 29건
- ◆ 회의결과
 - 적정 26건, 조건부적정 2건, 심의보류 1건, 부적정 1건

□ **주요발언 내용**

【13시 30분, 개회】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안녕하세요. 조직담당관 민간위탁팀장 ○○○입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소개는 위원장님 소개 후 외부위원님부터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 ○○○ 위원장님이십니다.
노무법인 한림 ○○○ 위원님이십니다.

<000 위원>

- 반갑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원님이십니다.

<000 위원>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총신대학교 ○○○ 위원님이십니다.

<000 위원>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상명대학교 ○○○ 위원님이십니다.

<000 위원>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건국대학교 ○○○ 위원님이십니다.

경기대학교 ○○○ 위원님이십니다.

<000 위원>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동국대학교 ○○○ 위원님이십니다.

<000 위원>

○ 안녕하세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홍익대학교 ○○○ 위원님이십니다.

<000 위원>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위원님이십니다.

<000 위원>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다음은 내부위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이십니다.

○○○ 경제일자리기획관이십니다.

<000 위원>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 복지기획관이십니다.

<000 위원>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마지막으로 간사 ○○○ 조직담당관이십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이상으로 위원 소개를 마치며, 참고로 과반수 위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개의 정족수가 충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 ○○○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 개의 정족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위원회 심의 안건은 저번에 공지해 드린 대로 총 30건으로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7건, 재계약 7건, 재위탁 16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시설형 23건, 사무형 7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탁사무가 유사하거나 소관부서 참석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기존처럼 소관부서 질의·응답, 주심위원 검토의견 발표, 참석위원 간 논의 및 의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오늘 심의자료 순서와 다르게 14번 안건이 있습니다. 14번 안건이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안건인데 이것을 세 번째 안건으로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은 동일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안건1〉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신규)

〈위원장〉

-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안건은 주거재생과의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시설형 신규 위탁 건 심의 사항입니다.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 주십시오.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안녕하세요. 주거재생지원과 총괄팀장 ○○○입니다.

〈위원장〉

- 저희가 설명은 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의 주심위원은 ○○○ 위원님이십니다. 질의·응답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잠깐 말씀이 들리나요?

〈위원장〉

- 예.

〈000 위원〉

○ 위원장님, ○○○입니다. 잠깐 한 말씀 먼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 예.

<000 위원>

○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심사자료에 보면 예산이 부기돼 있지만 여기서는 예산까지는 꼼꼼하게 보시지 않고 예산은 별도로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보신다라는 말씀을 미리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창 예산철이기 때문에 부서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혹시 이대로 여기에 써져 있는 예산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위원님이신데 아직 안 오셨나요?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팀장님.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참가자로 있으신데요.

<위원장>

○ 주심위원님은 ○○○ 위원님이십니다. 먼저 주심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주심위원님이 3시 이후부터 참석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가요?

<000 위원>

-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위탁기간이 2년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여쭙습니다.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위원님께서 지금 2년 위탁기간을 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서울시 조례에 의거 3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이 사업이 저희가 신규 민간위탁이지만 사실은 사무형으로 해 오고 있다가 저희가 서울시 시설에 금년도에 입주할 하게 돼서 시설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신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해 오던 민간위탁사업이 있어서 굳이 3년보다는 한 2년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저희가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1년 좀 짧게 이번에는 위탁기간을 정했습니다.

<000 위원>

- 예산은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예산도 물어봐도 되나요?

<000 위원>

-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예산과에서 예산 심사할 때 증액, 감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특별하게 인건비가 내년부터 감소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저희가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자료로 보시면 내용을 많이 담았는데 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자치구에 현장센터의 운영인력을 그간 저희 주거재생지원센터에서 30명을 지원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저희 주거재생사업이 자치구에서도 완성도가 높아져가고. 또 자치구도 예산편성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던 자치구 현장센터 운영인력은 금년도까지만 지원을 해드리고 내년도부터는 자치구에서 다 운영을 하시게 돼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현재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어 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위원장〉

- 그러니까 이 사무가 전에는 시청 옆 건물에 있었잖아요.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그때는 임대건물로 있어서 저희가 그전에 사무위탁으로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용산에 청년주택 용산베르디움이라고 금년도에 준공을 하게 됐어요. 거기 2층에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약 330평 규모로 입주할 하게 돼서 이번에 시설위탁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라 이것죠?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네.

<위원장>

-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기존의 수탁업체에서 올해 3월에 계약해지 요청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스토리인가요?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저희가 2017년도에 최초로 사무위탁을 저희하고 지금 현재 위탁법 인하고 수탁을 체결을 해서 한 번 연장을 했어요. 한 번 연장을 해서 사실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 민간위탁기관에서도 그 전에 종료를 할 수 있으면 종료를 하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주셨고, 마침 또 저희가 이번처럼 신규위탁으로 새로운 위탁을 지금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현 위탁법인도 위탁 계약까지 안 가도 좋다는 의사를 주셨고, 저희도 신규위탁으로 다시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신규위탁을 해도 계약이 종료기간까지 안 가도 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SH에 이 사업을 대행으로 맡길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번에 민간위탁 상정하기 전에 공공위탁을 좀 고민을 해서 SH에다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고용문제가 사실 저희 산하기관에 상당한 짐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셔서 일단 SH에서는 인력채용 규모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위원장〉

- 주심위원님께서서는 검토의견에 기능이 예를 들어서 집수리 지원이 이게 시 사무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기초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신데 이 기능과 관련해서는 시 내부에서 정리가 다 돼 있나요?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집수리 관련된 사항은 저희 서울시 관련된 조례로 인해서 서울시장이 중앙집수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센터 안에 있는 것은 서울시 중앙집수리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000 위원>

- 방금 집수리에 대한 근거규정이 뭐죠? 지금 서울시장이 설치하게 돼 있다라는 근거규정이?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서울시 집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000 위원>

- 혹시 이 사업하고 군특 도시재생사업하고 관계가 있나요?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결국은 낙후된 주거지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한 취지에서 주거개선 환경사업이라는 것에서는 취지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당초에는 유사한 센터들은 기능을 통합해서 가자는 서울시 취지였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아닌 저희 옆에 주거환경과라고 그쪽에서 집수리 관련된 것은 총괄하고 있는데, 중앙집수리지원센터를 검토

할 당시에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거의 기능이 중복되고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 센터의 일부분으로 이 사무를 두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부서 담당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 ○○○ 위원님이 주심위원이신데 아직 참석을 안 하셨는데요, 주심위원님께서서는 부적정으로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이 사업은 모든 지자체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3년 동안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마무리를 잘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것을 부적정하기로는 좀 곤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000 위원〉

○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지만 그래도 주심위원님 의견을 듣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조금 보류했다가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위원장>

- 그러면 맨 마지막에, 30번까지 다 한 후에 마지막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조직과 팀장님,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네, 말씀하십시오.

<000 위원>

- 방금 그 실무자 좀 다시 한번 호출해 주시겠어요?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위원님, 지금 부서 팀장이 잠시 자리를 떠서 그분 돌아오시는데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2번 먼저 하고 다음 번에 준비되면 질문을 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2번 안건으로 넘어갈까요? ○○○위원님 어떠신가요?

<000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건2>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신규)

<위원장>

○ 2번 안건은 미래청년기획단의 “서울청년센터 강서오랑” 시설형 신규 위탁 건 심의 사항입니다.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십시오.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

<담당 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공간운영팀장 ○○○라고 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심위원이십니다.

<000 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가 지금 현재 8개소를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담당 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 지금 전체 현황은 10개소가 있고 그중에 3개소가 서울시 민간위탁이고 나머지 7개소는 자치구 운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7개는 자치구가 하고, 3개를 위탁하고 있습니까? 여기 쫓던 자료에 보면 지역별로 서울청년센터가 8개소가 조성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 현재 운영 중인 건 10개소입니다.

<000 위원>

○ 이것을 다 서울시에서 지금 민간 위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담당 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 3개소는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7개소는 자치구가 운영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래서 이번에 강서지역에서 새로 만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구별로

하나 정도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라는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도 궁금했던 게 이게 이렇게 민간 위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자치구별로 하나씩 둘 것이라면 자치구로 보내가지고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토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자치구별로 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담당 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가 센터를 자치구별로 약 1개 자치구 1개소 확대 계획을 하면서 향후에는 자치구 전부 운영할 건데 그 전에 자치구의 운영여력이 없거나 구청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시에서 먼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제가 민간위탁을 쪽 보다 보니까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도 될까 싶은 것도 다 민간위탁을 하고 그래서 경계선에 걸쳐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것은 자치구별로 설치를 한다고 하길래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름이 서울청년센터인데 제가 유사사업을 알지 못하는데, 이게 지금 청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크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를테면 우리 주민의 연령을 기준으로 해가

지고 지금 대상자를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청소년 센터는 따로 없나요?

<담당 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 서울시 청소년센터도 따로 있습니다.

<000 위원>

○ 이를테면 청소년센터가 청년센터하고 사업이 좀 중복되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구체적으로까지는 모르겠고, 연령대가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소년 후반대,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규정한다고 보면 초반기 청년은 중복이 되고, 사업은 그렇게 청소년 사업이랑 겹치지는 않습니다.

<000 위원>

○ 그래서 결국은 하는 일이 상담하고 정보 제공하고 네트워크 지원 하는 이런 것이어서 안에 이름을 어떻게 달든지 간에 결국 내용은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제가 이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제목이 '서울청년센터' 이렇게 돼 있어서 딱 느낌이 유사한 일을 하는 센터들이 많겠다는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만약에 계속하신다면 사업을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구분될 수 있는 정도의 이 명칭과

사업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통폐합 해가지고 사업을 합쳐가지고 다시 기능별로 바꾸든지. 연령별로 하는 사업은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좀 궁금했구요.

나머지 이 사업 관련 자체는 사업이 인정이 된다면 지금 민간위탁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지요?

지금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중력센터의 기능 중복인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담당 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 무중력지대요?

<위원장>

○ 네.

<담당 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 무중력지대랑 청년센터랑 약간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무중력지대는 지금 현재 7개소가 있는데 내년에 전부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청년센터로 다 전환할 계

확입니다.

<위원장>

- 그리고 지금 서울시 위탁이 3개고 자치구 위탁은 7개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운영방식을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효율화 방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자치구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런데 이게 지금 어차피 시 보조금을 자치구에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시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시의원이 지역구에 요청한다고 해서 시가 직접 민간위탁 하고,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구청이랑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일단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그 기간 내에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구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 지금 자치구 위탁이 대부분이 있잖아요. 7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애초부터 구 사무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 애초부터 왜 전부 자치구로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 내려보내 줄 것이고 자치구에서는 위탁사업자 선정만 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담당 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 그때 저희가 청년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을 했을 때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개소는 자치구의 의지가 강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했던 것이고, 나머지 3개구는 각 지역에 다른 청년공간이 있어서 운영할 여력이 없다든가 했을 경우에 저희가 먼저 추진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치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면 자치구에서 거부를 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보조금 내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치구에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통일시켜야 되니까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 그 부분은 앞으로 새로 조정할 때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시면,

〈000 위원〉

-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중력 지대, 그다음에 청년센터인데 자치구가 운영하는 게 있고. 시가 위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혼선이라고 하면 혼선, 다양성이라고 하면 다양성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센터들이 다 있는데 청년센터가 있으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당장 한 달 안에 그게 정비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은 드리되 지금 강서 오랑 같은 경우가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년을 줄여서 2년 정도로 하고 올해, 내년 중으로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는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 네, 위탁기간 축소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은 좀

너무 짧은 것 같고 2년 정도를 해 주셨으면,

<000 위원>

○ 말씀을 크게 해 주시겠어요? 잘 안 들립니다.

<담당 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 지금 3년 기간이 너무 길어서 축소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신 것이죠?

<000 위원>

○ 네네. 정비할 시간 정도는 갖되 좀 줄여서 할 필요는 없느냐.

<담당 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 예예,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년 위탁기간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한 2년 정도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럼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도적인 정비는 하되, 이번에 일단 위탁운영은 하되 제도적인 정비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2년으로 줄여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 담당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

다.

<담당 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 감사합니다.

<위원장>

○ 주심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지금 질문·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이 서울청년센터 사업은 현재 몇 군데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그 위탁하는 방식이 자치구에 보내는 방식도 있고 직접 민간위탁 하는 경우도 있어서 통일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조건부로 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통일된 방식을 적용하라는 것을 조건을 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현재 민간위탁을 인용은 하되 기간을 한 2년 정도로 짧게 하고 2년간 나머지까지 다 통합여부라든지 운영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기간을 짧게 하는 방식으로.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위원님께서서는? 조건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정으로 하되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나올까요?

〈000 위원〉

- 어떤 식으로 하셔도 주심위원님 말씀처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2년으로 하고, 그 와중에 시스템을 개편하고 2년 후부터는 개편된 시스템에 맞춰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네, 그러면 조건부 적정으로 하고,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적정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2번 안건은 사업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 이어서 3번 안건은, 원래 14번 안건입니다. 3번 안건은 사회적경제 담당관의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사무형 재위탁 건 심의사항입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번 안건 담당팀장이 돌아왔습니다. 도시재

생지원센터 잠시 질의·답변을 진행해도 될지요?

<위원장>

○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럼 들어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 다시 뵙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죄송합니다. 주거재생총괄팀장입니다.

<000 위원>

○ 집수리지원단의 근거조례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입니다.

<000 위원>

○ 집수리지원단이 아니고 집수리지원센터인 것이죠?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예예, 맞습니다.

<000 위원>

○ 센터를 지원단으로 본다 이것이죠?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센터의 기능을 저희 집수리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000 위원>

○ 이 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근거는 뭔가요?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저희 집수리지원센터요? 도시재생지원센터요?

<000 위원>

○ 지원센터를 지금 팀장님께서 집수리지원단으로 본다고 했고,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예예.

<000 위원>

○ 그럼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 위원님, 그건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보통 보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근거조례에 그것에 대한 위탁 도입근거가 있는데,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예예, 맞습니다

<000 위원>

- 근거가 아까 팀장님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제가 의결을 했는데 조례가 민간위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아, 예. 맞습니다, ○○○ 위원님. 그것은 시장이 설치하도록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집수리지원단에 민간위탁을 했던 것은 근거 없는 위탁이 된 것이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가지고 제가 거기서 근거를 찾아봤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요.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조례에 위탁에 대한 근거를 조금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그건 다음에 해서 다음에 위탁을 맡기면 모를까 현재 지금 심의에 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네네.

<000 위원>

- 일단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회의가 끝나기 전이라도 그 논 거가 있으면 좀 이따 다시라도 오셔서 논거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예.

<000 위원>

- 안 된다고 하면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더라 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더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얼른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오늘 저희가 안건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예정이니깐요 그 사이에 준비 부탁드립니다.

<안건3>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재위탁)

<위원장>

○ 그러면 다시 3번 안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 주십시오.

부서 관계자께서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상정한 사무는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주심위원께서는 ○○○ 위원님이십니다.

<000 위원>

○ 지금 이 사업이 수탁기간이 현재 하고 있는 사단법인이 한 9년 정

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현재 하는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지금 3년,

<000 위원>

○ 3년입니까?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예예, 3년입니다. 그전에는 6년간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했습니다.

<000 위원>

○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위탁운영 하다가 지금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다시 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네.

<000 위원>

○ 그 이유는 뭘니까?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아무래도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고요, 서울시 출연기관이고 중소기업 지원업무라든지 이런 데 특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기업들도 대부분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지원하고 육성하는 업무는 아무래도 전문성 측면에서,

〈위원장〉

-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화면이 끊긴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잠시만요, 위원장님. 여기 지금 시청 네트워크가 약간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시청 네트워크가 약간 불안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 네, 기다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위원장〉

- 네네, 들립니다.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서울산업진흥원이 아무래도 중소기업 지원이나 육성 그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서울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한 6년을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쪽 운영을 하다가 왜 민간위탁을 하셨죠? 3년 전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당시에는 또 무슨 이유였어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그때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6년간을 계속 했거든요. 6년이 끝난 시점에서 한번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해 보는 게 어떨겠느냐. 그래서 기존에 서울산업진흥원이 들어오면 또 새로운 다른 수탁 희망기관이 들어오면 공모로 해서 심사해서 다시 한번 선정해보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000 위원>

-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하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지원을 할 수 없는 거죠?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할 수는 있습니다.

<000 위원>

○ 제한은 없으세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예. 왜냐하면 2016년 12월까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6년간 계속 맡아서 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000 위원>

○ 서울산업진흥원이 공개모집 할 당시에는 안 들어왔나 보죠?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네, 서울산업진흥원이 그때는 안 들어왔습니다.

<000 위원>

○ 그럼 이번에 만약에 재위탁으로 해서 공개모집 진행을 하면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을 해보지 못했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고 그러면 서울산업진흥원 그쪽하고 접촉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000 위원>

○ 지금 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보니까 평가가 대체적으로 점수는 한 80점 정도 나왔는데 수탁기관의 전문성은 전반적으로 인정이 되지

만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컨설팅 등 역량개발, 교육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성과평가현황이 적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는 뭔가 좀 미흡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 산하 출연기관으로 위탁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하여튼 저희는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그 결정을 충실히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000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혹시 산업진흥원인가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서울산업진흥원.

<000 위원>

○ 거기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그런데 한 3년 전에는 거기서 계속 맡아서 이 업무를 했었는데, 3년 전에 새로운 수탁기관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해서 만약에 이 업무를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우리가 다시 공모한다고 했을 때 생활산업진흥원이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000 위원〉

○ 위원장님, ○○○인데요. 산업진흥원이 저희 경제실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아마 지난 7~8년간 SBA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손을 뗀 건 아마 공개모집을 해서 공모를 하더라도 SBA 자체는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이 부분이 SBA 자체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계약직이 아닌 아마 정규인력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면 지속적인 수탁이 돼야 그 인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응모에 여기에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사단법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조직이나 이런 부분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지금 여기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 업무 수탁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거기 수탁해서 그 업무도 수행하면서 동시에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육성 지원사업 이것도 수탁 받아서 계속 3년간 지금 수행해 왔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해서는 대표가 지금 ○○○ 선생님이라고 지금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꽤 그래도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럼 센터를 운영하는 사단법인이면서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예, 그러니까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육성 지원사업도 수탁을 받아서 이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럼 위탁기간은 동일합니까? 아니면 위탁기간이 달리 되어 있나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금년 1월에 3년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000 위원>

- 그다음에 이 사업의 위탁기간은 그럼 한 1년 더 하게 되겠네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그렇죠. 여기는 만약에 이번에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한 2월부터 한 3년간 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000 위원>

- 이 부분도 센터와 사업이 거의 동일하다면 같이 기간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센터 부분에서 혹시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되고 업무는 이쪽이 되면 그 부분도 조금.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과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니면 한 개의 수탁기관이 그 업무를 같이 하는 것도, 별도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할 게 아니고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000 위원>

- 1차적으로는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센터를 위탁하면서 그 센터의 고유사무에 지금 말하는 어차피 센터가 해야 될 주요사업이 우수

기업 육성이나 지원일 것 같은데 그 안에 집어넣어서 같이 위탁을 가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예, 사회적경제 지원업무가 기본업무로 돼 있으니깐요.

<000 위원>

○ 그러니까 기본업무를 지금 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그 기본업무를 떼서 또 다시 위탁하고 센터는 또 시설만 위탁하고, 이 부분은 그다지 효율적이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우수기업에 1,500만원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게 이제 주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판로 개척이라든지 경영컨설팅, 홍보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사업 책임자가 한 명이고 밑에 두 명이 있어요. 예산 지원해 주고 그것만 해도 거기서 끝날 것 같거든요. 혼자서 기업들한테 판로 개척해 주고 이것은 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업무는 거의 못할 것 같거든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그래가지고요 그런 업무는 그전에 전에도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공공구매사업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추진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무에서는 기업들한테 예산 지원해 주는 그 업무만 할 것 같아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네, 맞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그냥 민간위탁이 아니고 보조금사업으로 위원회만 들어서 그냥 돈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저희 과 입장에서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부서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000 위원〉

○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 잠깐 질문 하나 있습니다.

<000 위원>

○ 자료집 492페이지 보면요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사회적기업이요? 서울시에 지금 인증, 예비 합쳐서요 한 1,000개 좀 넘습니다.

<000 위원>

○ 1,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그런데 보통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자활기업, 이렇게 네 가지 포함돼 있거든요.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5,000개가 넘는 데요 대부분 협동조합이 한 3,500개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1,100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활기업 조금, 마음기업 한 100개 있고 그렇습니다.

〈000 위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업 범위에는 협동조합도 들어갑니다.
나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우리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우리가 선정을 하거든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요 그 선정 대상에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자활기업, 사회적경제에 다 포함됩니다.

〈000 위원〉

- 그런데 492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4, 5,000개 되는 그 4개의 기업군 중에서 공통지원이 74개에 대한 것이 있고 맞춤형 지원이 32개사고.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네네네. 그것은 잠깐 설명드리면은요 우리가 우수기업을 선정을 하면 3년 동안 연간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총액으로 하면 4,500만 원 되죠.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돼 있고요. 그게 맞춤형 지원이고. 공통지원은 기존에 모든 선정,

〈000 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4천여 개 중에서 40개 정도의 기업

들한테 맞춤형 지원을 한 1% 정도 기업들한테 한나라는 것이고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예.

<000 위원>

○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네.

<000 위원>

○ 심사를 누가 하나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심사는 보통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들하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이라고 매년 연초에 통보되는.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수탁기관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의 보조금심의위원들도 거기 가서 같이 심사한다 이 말씀이죠?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선정할 때는 저희가 선정하는데요,

<000 위원>

○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네, 이 우수기업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해서 이렇게 통보를,
를,

<000 위원>

○ 저희가 어디냐고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서울시에서 합니다.

<000 위원>

○ 서울시가 선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수기업은 서울시가 선정을 하는데 돈은 누가 주나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돈은 매년 1,500만 원씩은 수탁기관에서 주죠.

<000 위원>

○ 그러니까 예산 재정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잖아요. 서울시가 선정해

서 서울시가 민간기업한테 가면 서울시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 지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기관을 통해서 가면서 민간위탁금으로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것은 회계원칙에 대한 위반이잖아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그러니까 저게 민간경상보조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이 되니까 이게 회계원칙에 지금 위반이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000 위원>

- 그렇죠.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예예.

<000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돈을 받을 기업들을 우리가 선정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지 않고 수탁기관을 통해서 위탁금으로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회계원칙 위반인 것이죠.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네.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000 위원>

- 지금 민간위탁으로,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저희가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해 왔거든요.

<000 위원>

-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산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맞춤형 사업 지원이 지금 492페이지에 있는 8억 5천 중에서 5억 1,200이고요, 그 예산이 대부분인데 선정은 서울시가 다 해 주면서 돈 입금 처리만 저쪽에서 하는 것으로 위탁을 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저희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은 민간위탁 하기에는 좀 그렇다. 단지 보조금 지원하

는 건데.’ 그 기업에서 사전 집행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받아가지고 서로 정산해주는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에 저거하다. 그래서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만약에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 만약에 직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000 위원〉

- 이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팀장님께서 소신껏 이게 맞고 틀린 것이라는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SBA로 가라면 가고, 그냥 재위탁 하라면 재위탁 하고, 직영하라고 하면 직영하겠다, 이런 것은 안 맞고요.

지금 이 회의 자체를 녹취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원칙에 위반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소관부서에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바로잡는다는 게 있어야지 “위원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걸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그런 점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또 과 내부적으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봐가지고 수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담당관)>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지금 질문·답변 과정에서 제가 최초 검토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적정의견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최초에 이것을 봤을 때 최초에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충분히 다시 또 검토할 만하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을 없애는 방식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여기 사업의 내용을 보면 운영인력이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3명이 할 정도의 일이고, 주로 사업비가 보면 식사비, 회의비 말고는 다 직접지원비여서 이게 이렇게 할 만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을 종합을 하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서울시에 직접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바꿔가지고 부적정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3번 안건은 부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000 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3번 안건은 민간위탁보다는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신규)

<위원장>

○ 이제부터는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안건은 평생교육과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설형 신규 위탁 건 심의 사항입니다.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십시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평생교육과)>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평생교육과에 ○○○입니다.

<위원장>

○ 주심위원님은 ○○○ 위원님이십니다.

<000 위원>

○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현재 서울시 경계선지능인이 몇 명이세요?

<담당 공무원 (평생교육과)>

○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 주목적이 경계선지능인 발굴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 983만 명 중에서 인구 분포도상 13.6%인 134만 명으로 경계선지능인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담당 공무원 (평생교육과)>

○ 예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 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이라든지, 민간위탁이 장애인지원센터가 있을 거예요.

<담당 공무원 (평생교육과)>

○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 또는 직영으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담당 공무원 (평생교육과)>

○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 민간위탁이나 센터를 설립하는 것보다 그것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특히나 서울시 발달장애인센터는 같은 빌딩이예요. 그렇죠? 장교빌딩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 (평생교육과)>

○ 일단 지적능력이 IQ가 71에서 84를 경계선지능인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IQ가 70 이하로 되기 때문에 이 경계선지능인은 정상인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고, 장애인으로 법적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지능인이 인지나 학습능력, 사회성도 결여돼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지만 법적으로 장애인으로 보호

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이에요?

<담당 공무원 (평생교육과)>

○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도 2020년 10월 달에 서울시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조례가 제정이 돼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000 위원>

○ 주무관님, 됐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히 저는 답변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담당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네, 저는 걱정 의견입니다.

<위원장>

- 4번 안건은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4번 안건은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5>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기구 (신규)

<위원장>

- 다음 5번 안건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기구” 사무형 신규 위탁 건 심의 사항입니다.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십시오.
담당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여성안심사업팀장 ○○○입니다.

<위원장>

- 주심위원님은 ○○○ 위원님이십니다.

<000 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일을 이렇게 신규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n번방이나 디지털 성범죄가 얘기된 지가 그래도 조금

됐는데 서울시에서 준비는 먼저 한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인천이나 경기보다 늦게 조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일단 궁금합니다.

〈담당 공무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일단은 근거조항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금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진행 중이었던 부분이라 저희가 생각했던 일정보다 조금 딜레이가 좀 됐었고요. 그래도 마침 민간위탁 심의 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민간위탁 심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17년도부터 선도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거의 다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지금 사업을 따라서 하고 있고요. 신규로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타 지자체에서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을 특화해서 저희 통합대응기구를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래서 지금 수탁기관을 서울시 출연기관이나 이렇게 공공기관으로 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공공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경험이 이게 되게 중요

하고, 또 그런데 경험해본 곳이 많지 않은 곳이어서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으로 제한하는 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기관 위탁했다가 직원들이 교육 받고 잘 적응 못해서 많이 교체되고 그만두고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험 있는 곳들이 조금 모여있는 곳이어서 이것을 비영리법인까지는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굳이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으로 한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담당 공무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지금 경기도 사례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시처럼 기존에 인프라가 없이 그쪽에서는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저희는 3, 4년 동안 처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하면서 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거의 없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3년 정도는 인큐베이팅 식으로 인력을 만들어야 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공기관 위탁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사업내용을 보시면 AI 삭제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민간공조, 그다음에 국제 공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단체 차원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공기관 위탁사업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해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성인권진흥원으로 가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 1366이나 이렇게 직접지원서비스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여기에 아마 서울여성가족재단을 상상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그런 경험은 조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처음부터 제한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협소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담당 공무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인데요. 혹시 해당부서에서 이게 만약 여성가족재단으로 가면 거기에서 재위탁은 못하는 거죠?

<담당 공무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갈 것이고요. 여성가족재단은 저희가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겠지만 여성가족재단이,

<000 위원>

- 유력한 후보이기는 한데 그러면 one of them으로 혹시, 여성가족 재단이 하도 유력한 형태니까 혹시 여성가족재단이 공개모집에서 선정이 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재위탁을 막을 예정이죠?

<담당 공무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당연합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한정시킨 건가요?

<담당 공무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네, 그런 부분이 일단 가장 큽니다. 삭제 지원이라는 부분이 민간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그다음에 보안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하면서도 저희가 손을 못 댔던 부분이 삭제지원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 주심위원께서는 검토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저는 아까 문제의식이 같아서요 비영리법인까지 조금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미 시작한 곳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서울여가재단이 가장 유력한데 사실 직접서비스사업 경험이 여성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이게 조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거기가 되더라도 일단 열어놓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그래서 그 수탁기관을 비영리법인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적정 의견 드렸습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가요?

<000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확대되면 이것은 개인정보랄지 좀 악용되거나 유출되거나 그럴 때 좀 책임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드는 것 같지 않은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000 위원〉

-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 민간에서 오랫동안, 오랫동안은 아니죠. 이 이슈를 다룬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으니까 DSO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나 이렇게 해온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사실은 지금 경기나 인천에서 받고 있고, 서울시도 그쪽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곳들이 비영리법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비영리법인까지 정도면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그 책임성을 조금 갖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사실 전문성을 따지면 민간기업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인정보를 취급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번 해보고, 처음은 공공기관에 한정해서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 3년 되면 평가가 될 것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떠신가요?

〈000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 네.

〈000 위원〉

○ 저는 사실 사업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아까 들어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제목이 디지털성범죄 통합대응기구, 통합이라는 말이 좀 걸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법률상으로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성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한다 해가지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잘 살펴보니, 우리 주심위원님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주로 하는 일이 피해자 지원을 하고 범죄예방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제목을 좀 달리 달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이것은 국가가 할 일이거든요. 중앙정부가 할 일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지원기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자꾸 이게 왜 국가가 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느냐라는 이런 괜히 쓸데없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개인정보 제공과 같은 위법 소지 가능성이 있다는 이 말씀은 공공기관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는 원래 수집 목적으로 수집했던 기간 이외에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다 제3자입니다. 그것이 공공기관이든 비영리기관이든 그것은 차이가 없고요. 그건 비영리 기관으로 확대하더라도 어차피 근거를 두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법적 이슈는 제가 봐서는 없고. 그것은 비영리 민간기관을 신뢰하느냐의 여부의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사업의 제목이 조금 실제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쟁점은 수탁 지원 대상 기관을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인데, 황 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00 위원>

- 민간기관에 하더라도 심사만 잘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통제장치는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은 믿을 만한 기관을 잘 선정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없고요. 그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 조직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부서에서는 개인정보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기관이라고 해서 개인 정보보호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첫 시 행하는 것이니까 한 2년 정도 한 번 맡겨보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영역을 수탁기관 범위를 확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 그러면 주심위원님 그냥 일단 공공기관으로 좀 한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000 위원〉

-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서울시에서 할 때 지금 이미 경기도나 인천에서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번 안건은 적정으로 의결하되 약간의 권고사항을 저희가 달아서 적정으로 의결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5번 안건은 사무내용에 맞게 위탁사무명을 바꾸는 것과 그리고 지원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6〉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

〈안건7〉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

〈위원장〉

○ 이어서 6번 안건은 아이돌봄담당관의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사무이고.

7번 안건은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형 신규 위탁 건 심의 사항입니다. 이 두 건은 유사하기 때문에 동시에 상정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십시오.

〈담당 공무원 (아이돌봄담당관)〉

○ 안녕하세요. 아이돌봄담당관에 거점운영팀장 ○○○이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위원장〉

○ 예, 반갑습니다. 주심위원님은 ○○○ 위원님이십니다.

〈000 위원〉

○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점 센터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기관들과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요, 계획서상에는 제목들만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일단 어떤 차별성 있는 사업들을 하게 하실 것인지랑. 이게 차별성이 있으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중소돌봄시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될 건데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사업비의

비율이 좀 작은 것은 아닌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담당 공무원 (아이돌봄담당관)>

- 지금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사업비가 적은 것 아닌지, 이것을 여쭙보신 거잖아요?

<000 위원>

- 네네.

<담당 공무원 (아이돌봄담당관)>

- 현재 이것은 4호하고 5호를 지금 심의하는 건데, 현재 1호하고 2호를 하고 있어서,

<000 위원>

- 동시에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아이돌봄담당관)>

- 네네. 현재 1호하고 2호를 하고 있는데 1호가 노원에 운영하고 있고 2호는 지금 동작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 내에 소규모센터,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에 아이들을 연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센터 자체가 워낙 넓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실내에서 뛰어놀면서 최신장비와 최신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프로그램에 대한 게 높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게 1년치 사업비가 아니고요 내년 하반기에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성북은 현재 8개월치가 잡혀있는 것이고, 구로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3개월치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조금 잡힌 걸로 보여지실 겁니다.

〈000 위원〉

- 5년 것을 다 보여주셔가지고 대략적인 건 파악을 할 수 있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중소돌봄시설하고의 차별성, 그다음에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 비율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이용 아동을 150명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시설의 규모나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으로 here를 이용하는 아동의 숫자가 150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중소돌봄시설을 지원하는 역할이나, 또 지역의 중소시설 아동들이 여기 저검 센터에 와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실제 하시는 일들이 반영이 좀 돼야 이마만큼의 예산을 쓰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아이돌봄담당관)〉

- 지금 현재 키움센터가 '20년 10월부터 지금 1호 센터가 운영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금년 1년 동안 1호하고 2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냐라는 것은 사업비나 지금 종사자나 이런 것에 걱정하게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내년쯤 한번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기존의 시설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원이 지금 150명 이렇게 잡혀있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의회건 예산과건 이만한 인력을, 그러니까 이용자들을 수용하면서 우리가 일을 한다, 이런 정도의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을 수치로 내보여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최대의 행할 수 있는 이용자를 잡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50%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들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말씀하시는 게 사업비가 적지 않냐라는 것은 현재까지는 코로나 시기여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역에 이미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 센터들이 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과 인력을 써서 거점형이라고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담당자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아이돌봄담당관)>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 주심위원님께서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저는 양쪽 다 적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 그럼 6번, 7번 안건은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6번 안건은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7번 안건도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8> 게임·미디어콘텐츠센터 (신규)

<위원장>

- 이어서 8번 안건은 미디어콘텐츠산업과의 “게임·미디어콘텐츠센터” 시설형 신규 위탁 건 심의 사항입니다.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 주십시오.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

<담당 공무원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콘텐츠산업과에 ○○○ 주무관입니다. 저희 팀장님이 부재 중이라서 담당자가 대신 왔습니다.

<위원장>

- ○○○ 위원님이 주심위원님이십니다.

<000 위원>

- 제가 심의의뢰서에 적어놓은 것 위주로 해서 몇 가지만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원래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되던 사업이죠? 게임·미디어콘텐츠센터 운영이요.

<담당 공무원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네.

<000 위원>

-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냈더라고요.

<담당 공무원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네.

<000 위원>

○ 신규사업으로 내면서 서울산업진흥원과 수의협약을 한 형식으로 신규사업을 냈는데 제가 볼 때는 게임·미디어콘텐츠센터 운영하는 것을 원래 서울산업진흥원이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낸 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조금 설명을 우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네. 이게 저희 붙임에 있는 민간위탁 추진계획 1페이지에 보시면 간단하게 나와있는데, 원래 저희 게임콘텐츠센터랑 미디어콘텐츠센터가 들어있는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을 원래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시설이랑 사무를 같이 이렇게 일괄로 통합사무로 해서 그간 민간위탁을 해왔거든요. 그게 최초가 15년도였고, 1차 재계약, 2차 재계약 돼서 올해 말까지가 스마트담당관에서 민간위탁 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올 상반기에 무정전전원장치라고 UPS 관련해서 정전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시설관리는 서울산업진흥원 취지랑 원래 설립목적에 맞지 않으니 시설관리는 더 이상 불가하다는 이런 의견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에서는 같이 하다가 시설 따로, 각 부서의 소관 업무는 따로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상반기에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TBS나 저희 미디어 쪽이나 이쪽이랑 다 각각 진행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에 다시 시설이랑 사무가 분리되면 이게 신규로 들어가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규로 일단은 올리게 됐고.

저희 말씀하시피 여러 가지 공공성이나 그간에 운영했던 노하우나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의 설립취지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업무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하기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수의협약으로 올렸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해한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시설과 사무 부분이 함께 통합돼서 진행이 되다가 시설 부분을 따로 떼내서,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게임·미디어콘텐츠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원래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공무원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했을 경우에는 신규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에 거의 그 시설 부분을 떼내고 나면 동일한 업무로 저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담당 공무원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체적인 관리를 따로 떼서 스마트담당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 고유의 사무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000 위원〉

- 제가 보완 필요사항에 적어놓은 것 중에서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서 보면 동종 혹은 유사사무 관련 부분이 이게 아마 공공성 부분 때문에 서울시 내에서 이 업무를 할 만한 기관이 존재하듯이 충분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통합돼서 했을 때는 사실은 또 조금 다른 부분인 건데 이것만 빼내고 게임·미디어콘텐츠센터 자체를 운영하는 것만 우리가 지금 금방 설명한 것처럼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센터 운영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사실 이 게임·미디어콘텐츠산업 자체의 발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1인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간이고, 이런 게 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설 부분을 빼놓고 본다면 이 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동종이나 유사사무 관련한 부분이 다른 기업들이 없다라고 보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그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담당 공무원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그런데 위원님, 제가 처음에 시설이랑 사무를 분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인 개발자 공간이나 저희 이스타디움이나 이런 시설이 있잖아요. 그것도 시설로 보고 분리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저희 경제정책실 소관이라서 그 사무에 그런 개발자 공간이라든지 이스포츠 경기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000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동종, 유사사무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시거나 해 주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담당 공무원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사업 운영만 하는 것 같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동종의 비슷한 데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운영 플러스 이스타디움 임대부터 운영까지 전체적인 공공성이 중요하게 생각돼서 그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00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예산 관련한 질문인데요. 제가 아마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질문을 한 것을 검토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콘텐츠가 두 개의 미디어가 있

고 게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미디어 부분하고 콘텐츠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예산 부분 지금 한번 봐 보실 수 있으세요?

<담당 공무원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네.

<000 위원>

○ 위원장님, 저희가 이렇게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심사를 했을 때 그 내용이 담당부서에 전달이 안 되나요? 여기에서 지금 질문하고 전달이 되는 건가요? 보통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미리 우리가 심의할 때 답변을 준비해 오시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담당 공무원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이번에는 저희 공유가 지금 아직 안 됐다고 하거든요, 위원님.

<위원장>

○ 사전에 일정이 촉박해서 부서에 의견이 전달이 안 됐다고 합니다.

<000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혹시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담당 공무원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네, 알겠습니다

〈000 위원〉

○ 아니면 추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총 52억인데 게임콘텐츠 부분이 22억이고 미디어콘텐츠가 29억 8,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 부분이 게임콘텐츠 부분은 13억 9,400으로 되어 있고요, 미디어콘텐츠는 4억 1,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위에 제시한 내용에 인력부분을 보면 4명, 3명으로 1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22년도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추가적으로 인력을 보충할 것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차이가, 그러니까 거의 세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산하고 관련해서 여기에 미디어콘텐츠 부분이 유망중소기업 성장 지원 토탈케어 프로그램 제공으로 15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콘텐츠랑 다르게 여기가 1인 미디어산업 육성 및 저변 확대에 9억 6,000만 원, 15억 3,000 이렇게 사업이 큰 게 아니고 큰 사업이 한꺼번에 예산이 잡혀있어서 제가 세부내역을 봤더니 여기에 토탈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잡아 놓은 15억 3천하고 세부내역에 보면 미디어 안심일자리 지원, 시장의 공약사항 이렇게 해서 인력양성 지원에 10억, 해외 판로 및 마케팅 지원이 5억 3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앞에서 설명했던

유망중소기업 성장 지원 토탈케어 프로그램 제공에 토탈케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인력양성 지원하고 해외판로 마케팅 지원, 이게 토탈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세부내역이?

<담당 공무원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너무 뭉뚱그려서 10억, 5억 3천 잡아놔서 사실 이게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왜냐하면 게임콘텐츠 부분도 여기도 성장 촉진프로그램을 잡아놨는데 여기는 약 4억 6,1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미디어콘텐츠 부분이 15억 3천이라 몇 명 정도의 인력 양성 지원을,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담당자들이 4명, 3명 이렇게 있어서 아마 미디어센터 부분이 3명인가 4명인가 그렇던데 이렇게 10억이나 되는 인력양성 지원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될 것이잖아요. 이게 가능한 건지,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잡은 건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질문 주신 인건비와 운영비 차이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게임이 미디어에 비해서 2배가 약간 넘는 데요,

〈000 위원〉

- 3배가 넘습니다.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가 하나는 4억 1,700만 원 이고요 하나는 13억 9,400만 원입니다.

〈담당 공무원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잠시만요. 이게 저희 지금 게임센터의 운영비가 과다하게 잡혔는데 사실 저희가 이스타디움이라고 이스포츠 경기장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이게 지금 주경기장이 있고 부경기장이 보조경기장이 있는데 저희 보조경기장이 원래는 올해 '21년 12월로 현재 지금 임대하고 있는 cj가 나가면서 아마 보조 쪽은 비교될 가능성이 되게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관리비로 4억 정도를 추가해서 잡았거든요.

〈000 위원〉

- 말씀 중에 잠깐만요. 제가 조금 알고 있어서 약간 답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일단 보면 게임콘텐츠센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한 14억 정도 잡힌 건 사실 미디어콘텐츠센터하고 게임콘텐츠센터가 좀 다르거든요. 게임콘텐츠센터에는 게임 관련 스타트업 창작지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자 219페이지에 보면 위탁사무 내용에 게임콘텐츠센터에 센터 내 제작공간 지원 해서 70개라고 써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70개사의 게임업체를 뽑아가지고 공간에다가 스타트업들을 입주시켜서 거기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판로 지원이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인력부분도 아마 미디어보다는 좀 많지만 운영비 부분에 지금 말했던 마케팅이라든지 제품화, 그다음에 이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비용이 들어가서 아마 14억 정도가 되는 걸 겁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보시면.

〈000 위원〉

- 그게 센터 운영비랑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금방 얘기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닌가요? 센터 운영은 말 그대로 이 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랑 비용이잖아요. 금방 얘기했던 1인 게임 하는 사업자들을 불러서 빌려주고 거기에 육성시키고 사용하게 하는 것은 센터 운영비가 아니고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비잖아요.

〈000 위원〉

- 게임콘텐츠센터는 1인 미디어 기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000 위원〉

-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건 1인 미디어 기업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프로그램 부분하고 센터 운영비하고는 약간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000 위원〉

- 예, 그 부분은 다른데요. 게임 스타트업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

고, 그다음에 이 게임콘텐츠센터에서 여기서 말하는 게임콘텐츠 성장 촉진프로그램이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말했던 센터 운영비 안에 포괄로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이 70개의 게임스타트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돌아가는 일괄로 아마 그 부분은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이걸 세부내역을 아마 우리한테 줘야 그 부분에 대한 비교가 가능했을 텐데 이걸 포괄로 넣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이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확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짤 때 센터의 운영비랑 인건비 이런 것은 사실 지원프로그램 운영할 때 사용되는 비용하고 분리해서 하는 게 일상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로 금방 ○○○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조금 더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 그 내용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 위원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부서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저는 조건부 적정으로 했고요. 아까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이 되어야지, 특히 예산부분이요. 그 부분 조금 보완되는 조건으로 저는 조건부 적정으로 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사업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놔서 정확하게는 예전 사업이랑 크게 차이가 되는 부분이랑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신규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000 위원〉

○ 저는 ○○○ 위원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산업진흥원이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여기처럼 어떤 특정사업을 쥐가지고 그 사업비로 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기관인

지.

〈000 위원〉

-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산업진흥원 SBA 예산은 거의 2천억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2천억 정도에서 한 900억 정도가 SBA 고유사업이고요, 그다음에 1,100억 정도가 서울시 각 실·국에서 수탁 받은 그 수탁예산이 한 1,1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유사업 900억 중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쉬운 얘기로 SBA 출연금이 한 550억 정도 됩니다. 고유사업의 대부분도 사실은 커버를 못하는 그 형태의 한 3분의 2 정도가 출연금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거기에서 임대료 수입이든 사업 수익을 통해서 보충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아까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요 그건 어떻게 보면 고유사업에 해당되지 않나요? 꼭 그게 어떤 위탁금이 있어야 산업진흥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가요?

〈000 위원〉

- 그래서 SBA가 사실은 정확히 명칭이 서울산업진흥원이기 때문이에요 이 산업 안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기업도 들어가고 협동조합이나 이런 약간의 사회에서 케어해야 될 그런 기업들도

들어가고요. 그 위에 소기업, 중기업 아마 요 정도까지가 범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했던 재단이라는 출연기관 고유목적상 너무 많은 지원을 통해서 수익이 없는 부분이 되다 보면 아마 존립 자체나 목적사업 자체가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밑부분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이런 사업은 일단은 지원영역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는 메인지원이 아닌 약간의 외곽지원 형태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소기업이면 대부분 10인 이상 99인까지의 기업 형태를 판로나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중기업 규모로 점프업 할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서울산업진흥원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시 정책사업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했던 사회적경제 기업과 같은 약간 소기업적이든, 아니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관여를 해야 된다 해서 그런 사업들은 수탁 사업 형태로 받아 와서 그게 한 몇 년간 계속 고유사업화 되면 고유사업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 손을 떼기도 하고, 그 부분들은 정책적인 판단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SBA에서 하기 싫어하는, 맡기 싫어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설하고 분리해서 사무만 이렇게 별도로 위탁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심위원께서는,

〈000 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난번 저희 7차 회의 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옛날 산업진흥재단 맨 처음에 2000년도 부근에 만들어졌을 때 이 기관에 대해서 봤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유업무들이 전부 위탁사업으로 가서 산업진흥원이 안 하고 다른 기관들이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산업진흥원이 맨 처음에 왜 생겨났는지를 보게 되면 지금 그 생겨난 배경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기관에 대해서 신문기자가 잘 파헤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더라는 생각이 첫 번째도 들었고, 이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게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

- 예, 그것은 한번 저희가 별도로 전반적으로 출연기관들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한번 갖는 것도 좋을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안건 위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000 위원〉

- 네, 좋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주심위원께서는 검토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검토의견은 아까 얘기했던 예산부분, 사업부분이 신규로 나오는데 아주 명확하게 그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 부분만 설명이 되면 저는 걱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걱정으로 하되,

<000 위원>

- 조건부 걱정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걱정 의결하겠습니다.

<000 위원>

- 네. 예산은 반드시 프로그램이 조금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8번 안건은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근 2시간이 경과했거든요.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지금부터는 이제 제 위탁 건입니다. 재위탁 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9〉 청년창업꿈터(1·2호점 통합) (재위탁)

〈위원장〉

- 9번 안건은 창업정책과의 “청년창업꿈터” 시설형 재위탁 건 심의 사항입니다.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십시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창업정책과)〉

- 창업정책과 서북권창업팀장 ○○○입니다.

〈위원장〉

- 이번 안건도 주심위원은 ○○○ 위원님이십니다.

〈000 위원〉

- 이게 재위탁 건이고, 재위탁을 공개모집으로 지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는 것이죠?

〈담당 공무원 (창업정책과)〉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그래서 종합평가 결과에 보면 위수탁사업 목적과 연계해서 직원의 직무역량 개발과 교육지원 노력이 요구된 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창업정책과)>

-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직원에 대한 그런 게 필요해서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 모집 공개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000 위원>

- 그러면 재위탁 공개모집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조가 되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지요?

<담당 공무원 (창업정책과)>

-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계약 의뢰해서 공개모집 해서 들어오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확인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일단 계약돼서 와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나서,

<000 위원>

-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종합평가 결과에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 된다고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보완사항으로 나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만약에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면 공개모집 시에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공개모집이 잘 돼야 되잖아요. 똑같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렇게 인력문제나 이런 부분이,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사업 자체가 또 평가가 별로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평

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평가결과를 가지고 보완할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공개모집을 하거나 이럴 때 이런 부분들 평가요소로 넣는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요구사항들을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냥 이것도 공개모집 해서 사업이 다른 사업기관이 들어오면 그때 돼서 또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으로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담당 공무원 (창업정책과)>

- 저희가 공개모집 할 때 심사할 때 최대한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더 없습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담당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창업정책과)>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저는 이것은 걱정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종합평가 결과 때문에 이렇게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아까 방금 소관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공개모집 시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전에 종합평가 때 조금 부족하게 평가가 되어서 나왔던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될 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야지 공개모집도 또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고려가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 그러면 9번 안건은 걱정으로 하되, 공개모집 시 종합평가 보완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고려하는 그런 것들을 권고하면서 걱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000 위원〉

- 직원의 직무역량 개발이나 교육지원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사실 이거 센터 운영하는데 꿈터를 운영하려면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공개모집 시 직원의 직무역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10> 서울 핀테크랩 (재위탁)

<위원장>

- 다음 10번 안건은 금융투자과의 “서울 핀테크랩” 시설형 재위탁 건
심의 사항입니다.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십시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금융투자과)>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핀테크랩 담당자인 ○○○ 주무관이라고 합
니다.

<위원장>

- ○○○ 위원님.

<000 위원>

- 이 사업의 종합평가 결과를 보셨죠?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셨죠?

<담당 공무원 (금융투자과)>

- 네.

<000 위원>

- 이게 결과를 제가 보니까 감점요인이 다수가 나왔더라고요.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감점요소가 마이너스 2점씩 해서 한 6점 정도가 감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금융투자과)>

- 네.

<000 위원>

-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것을 재위탁인데 공개모집을 하실 것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공무원 (금융투자과)>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핀테크랩은 굉장히 또 중요한 랩 중에 하나고. 그래서 공개모집시에 이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대책을 소관부서에서 갖고 있어요?

<담당 공무원 (금융투자과)>

- 일단은 성과평가 때 나왔던 문제점, 특히 인력운영과 관련된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내

년에 공개모집을 하고 다시 새롭게 서울 핀테크랩을 운영하면서 저희도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조금 강화해서 특히 민간위탁관리 지침, 조직과에서 매년 권하는 민간위탁관리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000 위원〉

○ 저는 추가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부서 관계자는 퇴장해 주십시오.

주심위원께서는 검토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저는 걱정으로 했는데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게 보통은 공개모집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재위탁 사업인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합평가 결과에서 이렇게 그 인력의 역량부분이나 아니면 인력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게 지적사항들이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음 공개모집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부서마다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종합평가 결과, 그러니까 종합평가 결과가 안 좋았으니 그래서 공개모집을 새로 하고 뽑고 난

다음에 지도감독을 잘하겠다 이걸로 하기에는 문제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공개모집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서 제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적정으로 심의 결과는 평가했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10번 안건도 적정으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이의 없으시면 10번 안건도 적정으로 의결하되, 수탁업체 공개모집 시 인력관리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권고하면서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11〉 서울역 실내급식장 따스한채움터 (재위탁)

〈위원장〉

○ 11번 안건은 자활지원과의 “서울역 실내급식장 따스한채움터” 시설형 재위탁 건 심의 사항입니다.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시시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자활지원과)〉

○ 안녕하세요. 자활지원과 자활정책팀장 ○○○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 주심위원님은 ○○○ 위원님이십니다.

〈000 위원〉

○ 지금 이 기관은 사실 운영하는 법인이 2013년도부터 계속 위탁을 해왔었는데요 시설장의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권모독이나 또 다수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발생을 한 건가요? 그래서 시설장의 어떤 개인 변수인 건지, 아니면 법인에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도 파악이 되셨던 건지를 한번 여쭙보고 싶네요.

〈담당 공무원 [자활지원과]〉

○ 이것은 최근에 발생한 사항이고요. 작년 초에 전임 시설장님이 퇴임하시고 그 다음에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20년, '21년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이것을 공개모집을 하시면 다시 이 기관이 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담당 공무원 [자활지원과]〉

○ 네, 현재 저희는 신청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설장의 어떤 개인 변수라 하더라도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건 법인에다가 하는 것이라서 관리감독의 어떤 그런 문제점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공무원 (자활지원과)>

- 일단 그 부분은 법인에서 관리감독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내년도에 공모를 할 때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그 부분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사실 이게 노숙인 사업이라서 할 수 있는 법인들이 한정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이런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개모집 할 때 다시 또 지원하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실 지에 대한 것들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여쭙봤습니다.

<담당 공무원 (자활지원과)>

- 네, 위원님 주신 말씀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공개모집 할 때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이렇게 조금 소규모의 그런 기관의 경우에는 사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조금 더 민감하게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 공무원 (자활지원과)>

-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부서 관계자는 퇴장해 주십시오.

<담당 공무원 (자활지원과)>

-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 주심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저는 내년에 공개모집 할 때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일단 그것은 하신다고 하셨으니깐요 걱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11번 안건은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12〉 서울심리지원제1권역센터(동남) (재위탁)

〈안건13〉 서울심리지원제2권역센터(동북) (재위탁)

〈안건14〉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센터(서남) (재위탁)

〈위원장〉

○ 12번 안건은 보건의료정책과의 “서울심리지원제1권역센터”, 그리고 13번 안건은 “제2권역센터”, 14번 안건은 “제3권역센터” 사무형 재위탁 건 심의 사항입니다. 동일한 부서, 유사한 사무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

○ 안녕하세요. 보건의료정책과 정신건강TF팀장 ○○○입니다.

〈위원장〉

○ 지금부터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이 주심위원이십니다.

〈000 위원〉

○ 안녕하세요. 지금 권역이 4개 권역으로 나뉘져 있네요.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

○ 네.

<000 위원>

○ 그런데 한 개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가요?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

○ 예, 한 개 번역은 9월에 저희가 새로 신규로 오문을 해서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000 위원>

○ 효과분석에서 우리가 8회차까지 개인상담을 마치신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만족도평가죠. 만족도평가를 해서 공교롭게 3개 권역이 모두 4.5점 만점에 4.3이 나와요.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센터별로 거의 예산은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8회까지 개인상담을 마치신 분이 동북은 138명, 동남은 105명, 서남은 434명이에요. 동남권역과 서남권역이 4배 차이가 나거든요.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

○ 센터별로 지금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소집단 교육도 하고 대집단 교육도 하고, 그리고 특성화 사업도 각각 센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센터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오

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어찌 됐건 심리상담센터니까 상담업무가, 심리지원센터이기는 하지만 상담업무가 주된 업무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

- 저희가 보면 개인상담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소집단 교육도 개인상담보다는 약간 적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개인상담이 실일원이 4,063명이면 소집단 실일원이 3,872명이거든요. 그리고 대집단 교육이 2,514명. 그러니까 비중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남은 개인상담은 105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다른 지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성과에 차이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

- 소집단 교육이나, 네.

<000 위원>

-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서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2021년도에 권역별로 예산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22

년도에는 또 동일하다고요. 보니까 3개 권역에서 시설에 대한 규모가 좀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예산 책정에 있어서 3개 권역이 다 동일한데 실제상 동일하게 집행되는 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권역별로 예산이 책정되는 게 맞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

- 권역별로 저희가 책정하는 예산은 똑같은데요, 똑같이 주는데 이분들이 그 예산에 맞추어서 본인들이 어떻게 예산을 쓸 건지 세부내역을 보내와요. 그럼 저희가 계약심사과에 이 예산항목이나 금액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산출내역이 맞는지 저희가 심의 의뢰를 하거든요. 그럼 계약심사과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어떤 센터는 이런 이런 과정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은 삭감하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출금액은 달라지고, 저희가 처음에 배부하고자 하는 금액은 같습니다.

〈000 위원〉

- 왜냐하면 사업내용이 같으니까.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

- 예예.

〈000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새로운 사업부분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서

비스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기업체 및, 그러니까 목적은 취약계층 발굴이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기업체 및 대학교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취약계층인가요?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

- 기업체 중에서도 기업체가 전부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심리지원에 굉장히 취약한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찾아가는 심리지원이 경제적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정 이런 곳도 같이 취약계층으로 저희가 다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관련, 한부모단체 관련 기업체나 이런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는 경제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이 있거나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더 많은 심리지원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올해 추가를 한 내용입니다.

〈000 위원〉

- 그런데 그 내용에서 보면 예를 드신 게 찾아가는 심리지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요 타겟층을 기업체 및 대학교 등이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

- 그것은 저희가 좀 적절한 예시를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함

니다.

〈000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체 및 대학교 어떤 기관에 가실 수 있는데
요 거기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코너
를 하나 만들 수도 없고,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지원이 개인상담도 있고요, 소규모 교
육이 있고 대그룹 교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는
교육 위주로 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전에 저희가 문답
지를 나눠드려서 고위험군이 걸리지거든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많이 호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고위험군이 걸리면 이분들은 내
원을 하시라고 해서 개인상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000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몫이

고, 심리지원센터는 상담심리 하는 분들 뭉치고 이렇게 나뉘져 있는데 많이들 기능이 유사하니까 통합에서 관리해라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

- 통합이라는 건 사실 힘들고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위주거든요. 그게 초기든 중증이든 질환자 위주고, 저희 심리지원센터는 심리적인 불안감, 상담이나 교육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상담이나 이런 교육으로 안 되고 뭔가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정신과적으로 우울이 심각하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상담을 끝마친 뒤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적인 의학적인 진료나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고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은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 없으시면 부서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

- 감사합니다.

〈위원장〉

○ 주심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저는 3개 권역 모두 적정으로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 혹시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2번 안건은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안건도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14번 안건도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15〉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재위탁)

〈위원장〉

○ 다음 15번 안건은 권익보호담당관의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시설형 재위탁 건 심의 사항입니다.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십시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권익보호담당관)〉

○ 안녕하세요. 저는 권익보호담당관 늘푸른여성팀에 ○○○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 ○○○ 위원님께서 주심위원님이십니다.

<000 위원>

○ 여기 보니까 십대여성건강센터에서 20대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여성진료나 치과진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진료와 관련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처음에 구입이나 이런 것을 예산을 쥐서한 건가요? 아니면 운영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된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장비 예산이나 이런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담당 공무원 (권익보호담당관)>

○ 예, 맞습니다. 그 장비들이 수천만 원대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수탁기관이나 이런 걸 모집하고 공고했었을 때 다행히도 후원 받은 산부인과 체어라든지 치과 체어 이런 것들을 법인에서 가지고 들어오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지금 보니까 수탁기관을 계속 공개모집은 했는데 한 운영 법인이 계속 운영을 쪽 해왔더라고요. 그 기관에서 그러면 후원 받아서 처음에 했다는 말씀이지요?

<담당 공무원 (권익보호담당관)>

○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장비 보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

가 예산을 더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처음에 세팅될 때에는 후원 받은 것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000 위원〉

○ 지금 기계가 꽤 몇 년이 지나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지 않나 그럴 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가, 더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필요한 부분을 하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부터 계속 매년 공개모집을 했는데 같은 기관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 분야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 다른 데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재계약이나 이런 것과 병행해도 되지 않을까. 계속 공개모집을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 번쯤은 재계약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담당 공무원 (권익보호담당관)〉

○ 예, 저희도 재계약을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시의회나 민간위탁지침상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재계약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너무 한 기관이랑 계약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까지 재위탁 공개모집을 시의회 동의도 있고 해서 하고, 향후에는 재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관만 계속 위탁을 받다 보면 그런 시선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

들을 아예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닌데요, 향후에 좀 더 고민해서 전문적으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소관부서에서 보실 때 혹시 이 분야를, 여성건강센터 십대에 특화된 이 부분을 같이 할 만한 경쟁력 있는 법인이나 이런 데가 있는 있나요? 이렇게 계속 재위탁 공모를 하셨으니까 다른 데서 들어오거나 이러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담당 공무원 (권익보호담당관)〉

- 네, 문의를 주시는 경우는 많았었고요. 한 번은 들어온 적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십대여성건강센터가 사실은 ‘밥 주는 무료진료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데 10대 여성에 대한, 그리고 위기를 경험한 여성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수탁기관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법인이 계속 위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시다.

〈000 위원〉

- 그러면 서울시에 ‘다시함께센터’도 운영을 하잖아요. 여기 십대여성건강센터가 그런 기관하고 기존에 성착취 관련한 기관하고의 가장 큰 차별성이 어떤 게 있나요?

〈담당 공무원 (권익보호담당관)〉

- 우선 ‘다시함께상담센터’라든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기관 같

은 경우에는 상담사 역할을 주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마포구에서 무료진료소라고 허가를 받고 잡고 직접 수탁 전문의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교육 받고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위기 10대 여성들을 만나서 진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 진료와 관련해서 건강에서 이어져서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담소에서 지원하는 의료 진료나 이런 것과는 온 곳에서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그들을 이해하는 의료진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돌봄이 부재된 경우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선생님 혹은 진료만 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큰데 처음부터 그냥 밥 먹는 순간부터 의사선생님들과 함께 이 공간에서 건강과 관련된 의료 진료까지 이렇게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특화되고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입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부서 관계자는 퇴장해 주십시오.

<담당 공무원 (권익보호담당관)>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 주심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네, 저는 걱정 의견입니다.

<위원장>

○ 15번 안건을 걱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15번 안건은 걱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절반 지났는데요 한 10분 쉬었다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46분이니까요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5시 47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안건16> 고덕수변생태공원 (재위탁)

<안건17> 난지생태습지원 (재위탁)

<안건18> 암사생태공원 (재위탁)

<안건19> 여의샛강생태공원 (재위탁)

<안건20> 한강야생탐사센터 (재위탁)

〈위원장〉

○ 위원님들, 위원회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6번부터 20번 안건은 한강사업본부 사무인데요 유사하기 때문에 5건을 동시에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안건은 “고덕 수변생태공원”, 17번 안건은 “난지생태습지원”, 18번 안건은 “암사 생태공원”, 19번 안건은 “여의샛강생태공원”, 20번 안건은 “한강야생탐사센터” 시설형 재위탁 건 심의 사항입니다. 부서 관계자 계시네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한강사업본부)〉

○ 안녕하세요. 한강사업본부에 공원여과과입니다. 오늘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5건 모두 주심위원님은 ○○○ 위원님이십니다.

〈000 위원〉

○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5개 위탁사무가 하나가 이질적인지 그것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한강야생탐사센터는 다른 4개랑 위탁업무가 전혀 이질적이어서 관리를 따로 해야 되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공무원 (한강사업본부)〉

- 한강야생탐사센터 같은 경우는 난지습지원 내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의 생태공원과 좀 차별성이 있는 것은 한강야생탐사센터 같은 경우는 한강 전체를 지역으로 해서 탐사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생태공원과의 차별점인 한강 전체를 탐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하고, 그리고 야생탐사센터에 시설물 관리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다른 것도 센터라고는 명명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생태학습센터도 난지에는 있고요, 그다음에 여의샛강도 방문자센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위탁업무를 그게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지 않고 평가를 했는데 실무 담당 입장에서는 한강야생탐사센터는 이 나머지 4개랑 이질적이기 때문에 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지, 그걸 여쭙본 겁니다.

〈담당 공무원 (한강사업본부)〉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른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의 유지관리나 그리고 생물 서식처 관리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을 하는데 야생탐사센터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또 이질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가령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횟수에 이 5개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각 위탁사무별로 차이가 있어서 체험프로그램 횟수에 차등이 필요한 건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담당 공무원 (한강사업본부)>

-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차등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000 위원>

- 그것은 일반적인 질문이었구요. 제가 이제 사안별로 한번 질문을 드리면요, 일단 고덕수변생태공원인데요. 2005년도부터 수탁자가 동일하더라고요. 바뀌지가 않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담당 공무원 (한강사업본부)>

-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위탁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업체가 여러 업체가 들어오지를 않고 한 군데 업체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유찰이 되고, 두 번 유찰됐을 경우에는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해서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 업체로 계속 지속적으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맡았던 업체가 또 다른 곳을 관리를 했는데 거기는 또 다른 단체가 맡은 데가 있더라고요.

<담당 공무원 (한강사업본부)>

- 예. 야생탐사센터를 기존에 고덕 수탁기관이 하고 있었다가 전년에 물푸레생태교육센터로 바뀐 바가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런 것으로 비추어본다면 운영에 계속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담당 공무원 (한강사업본부)>

- 그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 군데하고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제안서를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업체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000 위원>

- 두 번째 난지도 2011년부터 동일하더라고요.

<담당 공무원 (한강사업본부)>

- 네네.

〈000 위원〉

- 그리고 암사도 역시 2012년부터 계속 동일하고요.

〈담당 공무원 (한강사업본부)〉

- 예예예. 그런데 그게 한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위탁하는데 장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동일 단체가 계속 위탁할 경우에는 그쪽의 지역에 대해서 현황을 잘 알고, 그리고 식생물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니터링 하는 데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단점으로는 새로운 생태프로그램을 갖다가 도입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면을 갖다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리고 제가 네 번째, 다섯 번째 경우에 여의샛강하고 한강야생탐사센터, 여기는 앞에 3개랑 달리 예산 편성하는 단가들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 5개를 관리를 하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침이라도 있어가지고 어떤 단가를 적용해서 여기는 특별히 다른 적용을 해서 비용이 높게 책정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담당 공무원 (한강사업본부)〉

- 저희가 차기에 민간위탁을 위해서 이번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원

가계산을 받았습니다. 외부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받았는데
요, 지금 한강야생탐사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되시고요 운영비 쪽에서 차별된 것이 기존에 생태공원에 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리고 시설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모자라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가계산 하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생태공원과 비교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 것이고요.

그리고 여의샛강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기존에 예산 편성된 것이
운영비 쪽에서 모자란 부분들이 있는 것을 다른 생태공원하고 비
교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강사비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000 위원〉

○ 네, 저는 질문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부서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심위원께서는 검토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원가용역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니
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단지 너무 한 개 단체가 계속되는 것, 그것만 어떻게 시정만 됐으면 하는 그런 조건부도 아니고 그것을 노력하는 것으로 다 걱정으로 봤습니다.

<위원장>

- 일단 공모를 하니깐 그 부분은 평가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권고를 하기도 곤란하고 그런데요.

<000 위원>

- 그러니까 2005년부터 한 업체가 계속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복지도 아니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걱정이지요?

<000 위원>

- 예, 맞습니다.

<위원장>

- 여기에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16번 안건은 걱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17번 안건도 걱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18번 안건도 걱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19번 안건도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20번 안건도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21>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재위탁)

<위원장>

- 다음 21번 안건은 청소년정책과의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시설형 재위탁 건 심의 사항입니다.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시십시오.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안녕하세요. 청소년정책과 ○○○라고 합니다.

<위원장>

- ○○○ 위원님께서 주심위원님이십니다. ○○○ 위원님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요. 질의·응답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크게 질의·응답은 없고요. 그런데 사업보고서를 썼는데 사실 이 센터의 취지도 좋고 이해도 되고 하지만 실제 지금 하신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그냥 시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요즘 인터넷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자도 많고 해서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시기에서는 특히나 가정 내 학습을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상담이라든가 심리교육, 그리고 찾아가서 하거나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예방이나 또 치료를 통해서 오히려 더 효과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그건 소관부처 선생님의 말씀이시고요. 사업보고서상 전혀 그런 게 없고, 정말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 이런 기구가 필요한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즉 말해서 24시간을 우리가 인터넷 가지고 생활하는데 중독이고 안 중독인 기준이 뭡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고. 물론 병적인 경우는 문제가 되겠는데 과거처럼 우리가 게임이라든가 디지털 이런 문화가 별로 없어가지고 과도하게 이런 것을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저도 24시간 인터넷 보고 있습니다. 중독입니까, 아닙니까? 못 살아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실질적으로 제가 전문상담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독이다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월센터,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를 아이월센터라고도 하는데 여기 계시는 전문상담원

선생님들께서 이런 분들이 이러한 상황이 중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접수 면접지라든가 심리검사,

〈000 위원〉

○ 이것이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처음에 2007년에 생겼습니다.

〈000 위원〉

○ 2007년 그때 정도 되면 이 기구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우리가 24시간 디지털을 안 쓰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것을 가지고 누가 중독이다 아니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기구가 이미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쪽 그냥 관성처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서도 의미 있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보지를 않아서 얼마나 효과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정말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중독, 이것을 예방 상담, 이런 게 정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사실상 모두가 중독돼서 살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서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으로 했습니다마는 부 차원에서 한번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런 센터가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냥 이거 24시간 손에서 못 떼고 삼니

다. 솔직한 이야기로 누가 중독이고 누가 아닙니까? 애들도 마찬가지로요. 또 인터넷강의 한다고 해서 하루종일 인터넷 보고 있는데, 그럼 개는 중독인지 아닌지.

그래서 물론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2007년에 세워졌을 때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구가 정말 앞으로 필요할까에 대해서 원론적인 재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 알겠습니다.

<000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부서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감사합니다.

<위원장>

○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네, 걱정 났습니다.

<위원장>

○ 21번 안건은 걱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000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시면 21번 안건은 걱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22> 시립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위원장>

○ 다음 22번, 23번, 24번 안건은 담당 팀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괄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안건은 청소년정책과의 “시립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형 재위탁 건 심의 사항입니다. 23번 안건은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시설형 재위탁 건입니다. 24번 안건은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설형 재계약 건입니다. 담당자 출석시켜주십시오.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안녕하세요. 청소년정책과 ○○○입니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위원장>

○ 1개 사업에 대해서만, 같은 팀이시던데.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 같은 과 안건들인데요 성문화센터까지만 제가 하고요 나머지는, 네.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럼 2번 안건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000 위원>

○ 다른 건 저기한데요, 여기 프로그램 보니까 참여자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체 수익금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민간위탁금의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참여자들이 돈을 지불하는 프로그램이 그것도 무료로 하지 이렇게 상당히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저희가 100%로 무료로 수업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저희가 부서에서 청소년시설을 6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별로 청

소년센터도 있고 진로센터도 있고 저희 성문화센터도 있고 하는데 100%를 다 지원하지는 못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다 가능하지가 않아서,

<000 위원>

-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지원한 예산 가지고 거기서도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추가로 돈을 받으면서 자기들 수익을 더 남기냐, 그것을 여쭙보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저희가 조례상에서 사용료 상한선을 두고 상한선 이하로는 소정의 한 번 상담할 때 5천 원이라든지 그 정도의 상담료나 교육료는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 안 받으면 좋을 텐데, 공익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 그런데 저희가 보통은 간식비라든가 소정의 수입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도 있고, 아주 일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받을 수는 있는데 안 받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왜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운영하는지.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저희가 수익구조상으로 약간, 그러니까 전액 다 100%를 프로그램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더 많은 수업을 하면서 일부는 수업료를 받아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저희가 고려해서,

<000 위원>

- 확실하게 이 보고서만 가지고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말은 차마 못 하겠지만 그냥 무료로 해줘도 되겠지만 그 돈을 받아서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서울시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아가는데 애들 코 묻은 돈을 꼭 받아가지고, 어른들이 말이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그냥 그것도 무료로 해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 위원님 좋은 말씀 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000 위원>

- 애들 와가지고, 좋은 취지잖아요. 성문화상담센터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기관한테 '무료로 하지 왜 그렇게 애들 코 묻은 돈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만큼 주고 있는데, 너희들도 좋은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니냐.'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끝까지 봉사를 해야지 굳이 애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얼마 큰
돈도 아니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육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한번 기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 알겠습니다.

<000 위원>

○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장>

○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으시면 부서 관계자는 사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감사합니다.

<위원장>

○ 주심위원님께서서는 검토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애들 돈 안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저는 걱정으로 하려고 지금 했는데 걱정으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21번 안건은 걱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23> 시립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재위탁)

<안건24>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계약)

<위원장>

○ 그리고 22번, 23번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만요. 제가 잘못했나요? 22번 안건에 대해서 걱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3번, 24번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안건은 주심위원이 다르신데, 같이 상정할까요? 주심위원님이 달라서 제가 같이 상정을 안 했는데.

<000 위원>

○ 일단 저 끝나고 하시죠.

<위원장>

○ 예예, 그러시죠. 그러면 23번, 24번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십시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정책과 정책팀장 ○○○입니다.

<000 위원>

○ 안녕하세요. 저 ○○○입니다. 제가 그냥 몇 가지 질의할게요. 여기 사실상 운영하는 데가 대산문화재단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

<000 위원>

○ 교보생명에서 출연한 재단이잖아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

<000 위원>

○ 그다음에 그 전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인가 거기서 했고요. 맞죠?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저는 그냥 궁금한 게 대산문화재단은 대기업 산하 재단 아닙니까? 그런데 대기업 산하 재단에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냥 본인들 자체 해도 될 텐데.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이 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거죠?

<000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대기업 자체적으로 자기들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서울시의 보조금까지 더 해서 하느냐고요.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내용이 보니까 인건비 위주더라고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좋은 일은 자기들이 한다고 광고는 해내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서울시 세금 가지고 다 하고. 그렇잖아요? 대산문화재단에서 맨날 광고하는 것 아닙니까. 교보생명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한다 뭐 하면서, 우리가 청소년들 것 이런 것도 한다 하면서 사실은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인건비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에서 돈 받아가지고 하면서.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이것은 대산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문화교류센터는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된 센터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요. 만약에 수탁기관이 대기업이 아니고 무슨 그냥 민간단체라든가 무슨 학교라든가, 그런 데는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데서 수탁해서 하는 건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대기업이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영업이익 많이 남겨서 그중에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자기들이 대산문화재단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활동의 모든 명의를 저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명의로 나가는

것이고요 대산재단은 그냥 운영만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모든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로 나갑니다.

〈000 위원〉

- 물론 그렇죠. 그런데 실제 이걸 공고 내면 그렇게 대기업 외에는 할 데가 없나요? 제가 보니까 실제 하는 사업도 그렇게 특별한 사업도 아니고 그렇던데.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 재공고 나가는 것이고요. 재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공개모집입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재공고 나가서 지금까지 한 단체 보니까 대산문화재단이 지금까지 절반 했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절반 했고.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정말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조금 경제적으로 힘든 이런 단체들이 와서 사업내용은 충분히 하고도 남을 내용인데, 크게 별 내용도 별로 없더만요. 그런데 꼭 이런 걸 어떻게 된 건지 대기업에서 이걸 수탁을 하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수탁하고.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공고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이것은 청소년단체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 정성이랑 정량평가포에 의해서 들어온 업체 수탁법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평가는 외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저희가 심의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업하는 내용이 대기업이 할 만한 내용도 아니더만요. 일반 그냥 민간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일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다음 내년 공모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000 위원〉

- 예, 그래서 그냥 그 조건 하에서 조건부 적정 컸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공고 조건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민간단체 영세한 단체들이 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만 유독하게 교보생명,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돈 잘 버는 회사의 재단에서 와서 하고 있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내용도 그렇게 대기업에서 할 만한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공고 내실 때 다른 대학이라든가 민간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공고를 내셔서 대기업이 아닌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참고해서 제가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넓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그럼 다음 안건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 네.

<000 위원>

○ 그러면 다음 안건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잖아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

<000 위원>

○ 여기 보니까 여기도 계획서에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활동했다는 평가내용이 약간 부실해서. 그런데 이걸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데가 한국청소년연맹인가 거기죠?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 청소년연맹입니다.

<000 위원>

○ 거기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죠?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거기 보니까 청소년진흥, 정확하게 뭘니까? 청소년진흥연맹입니까?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한국청소년연맹입니다.

<000 위원>

○ 그래서 보니까 총재부터 해가지고 이사들 한 20명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진짜 이것이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거기 관에서 물러난 사람들 그냥 자리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연맹을 만들어놓고,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단체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서울시나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해서 이런 활동하게 하고.

실제 활동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정말 이 활동이 그냥 백화점식으로 모든 걸 한다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직담당관에서 기존에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재단이 커서 다른 시설들을 많이 운영하는 데가 유리하게끔 평가지표가 좀 있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금 알기로는 조직담당관에서 민간위탁지침을 개선하면서 기존 수탁업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던 그런 평가항목들을 신규업체들이 진입하기 쉽게 하도록 지금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단체가 그 연맹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거의 이 단체를 위해서 돈을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형식인 것 같아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저희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조직담당관에서 개선하고 있는 대로 해서,

<000 위원>

- 그런 걸 개선한다는 조건 하에서 제가 그냥 조건부 적정을 쫓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번 시장님도 개선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서 이견 좀 아닌 것 같다. 마치 관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그냥 놀기 뭐하니까 무슨 연맹 사무총장 자리 주고, 이사 자리 주고, 그 사람들 자리 줄라니까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 같은 것 만들어가지고 주는 느낌을 이것을 보면서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 무슨 활동을 했는지 포커스가 없는 단체여가지고 그냥 백화점식으로 청소년 관련된 모든 걸 하겠다는 이런 것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 알겠습니다.

<000 위원>

○ 이상입니다.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지요?

<000 위원>

○ 제가 한마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 네.

<000 위원>

○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화시설은 특화시설인데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관련되어진 모든 시설을 일단 서포트해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역량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지원하는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화점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굉장히 적당한 표현이지만 다양한 모든 사업영역에서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기관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예, 맞습니다. 청소년 활동 정책 수행기관이고요, 실제로 청소년의 직접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청소년지도자들 교육시키고, 이런 게 주활동입니다.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담당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제가 뒤에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위탁,

<위원장>

○ 예, 나갔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 주심위원께서는 검토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방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조건부 적정을 했고요. 적정으로 다 하
겠습니다.

<위원장>

○ 예, 그러면 23번, 24번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23번 안건은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24번 안건도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25〉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재계약)

〈위원장〉

- 다음 25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형 재계약 건 심의 사항입니다.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시십시오.

주심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교육과 관련된 곳인데 계속 위탁기관이 공모를 해도 한 기관만 했다고 되어 있어서 인권교육을 할 만한 곳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참여가 낮은 이유가 특별히 소관부서에서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이게 지금 시설위탁이 아니고 사무위탁이고요.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지원하는 법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인권이라는 부분이 좀 한정돼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계속 지금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래서 아마 재계약도 하시는 것 같은데, 단독으로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면 재계약을 굳이 2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어차피 단독으로 들어올 것이고 인권교육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시면 3년 정도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2년으로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저희 민간위탁지침에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요. 최초 계약할 때 3년, 그리고 연장할 때 2년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교육만족도조사가 지금 4.24점, 4.25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5점 만점 척도인 거죠?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네.

<000 위원>

- 그러면 꽤 높은 편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전환이나 이런 것은 사업내용에서 봤는데 그래도 만족도가 더 높아진 이유가 있나요? 인권교육이나 이런 게 수요가 있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이게 학교나 이런 단체들에 가서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컨설팅이나 강사양성사업이나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네, 저는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 다른 의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지요?

이 사업 같은 경우 사업 수행인력이 3명이잖아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네.

<위원장>

○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의 팀원 한 명이 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면 교육일정 잡고 외부강사 섭외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 게 그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잖아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

<위원장>

- 단순히 외부강사 섭외하고 일정 짜고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역할만 한다면 이걸 왜 민간위탁으로 하는지 궁금한데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제가 질문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위원장>

-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그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 맞습니다.

<위원장>

- 인권교육과 관련한 전문성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실제 팀원 한 명이 교육일정 짜고, 그리고 외부강사 섭외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면 굳이 아무 기관에 맡겨도 되는 것과 또는 용역으로 해도 되는 건데 이 기관에 이것을 꼭 맡기는 이유가 뭔지.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지금 현재 직원은 3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 1명은 정규직이고 나머지 2명은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시설장하고 사무국장 정규직은 법인에서 무보수로 파견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

고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인권 관련해서는 UN아동 권리협약에 의해서 이 기관을 설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성이 인정이 되고 있어서요,

<위원장>

- 그러니까 이 기관의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자체강사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외부강사 섭외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굳이 이 기관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실제로 그렇게 되면 저희 인력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권업무를 전담해서 맡을 수 있는 전담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기제나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뽑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 또 그게 아니면 용역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용역으로 하게 되면 1년 단기연도로 하게 되면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게 되면 계속 사업자료가 축적이 돼서, 물론 저희가 관리를 하고는 있겠지만 그게 관리 자체가 좀 힘들고

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외부용역은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

〈위원장〉

○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네, 저는 걱정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25번 안건은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26〉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재계약)

〈안건27〉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재계약)

〈안건28〉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재계약)

〈안건29〉 시립마포청소년센터 (재계약)

〈위원장〉

- 다음 26번부터 29번 안건도 유사한 안건이기 때문에 동시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안건은 청소년정책과의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27번 안건은 “시립화곡청소년센터”, 28번 안건은 “시립문래청소년센터”, 29번 안건은 “시립마포청소년센터” 시설형 재계약 건 심의 사항입니다. 부서 관계자 입장 시켜 주십시오.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정책과 정책팀장 ○○○입니다.

〈위원장〉

- 그러면 ○○○ 위원님이 주심위원님이십니다.

〈000 위원〉

-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같은 경우 특화시설이죠?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네.

〈000 위원〉

○ 특화시설이고, 그와 유사한 시설 중에 하나가 하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이 두 센터 간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진로·직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인데 유사하지만 분명히 어떤 특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센터를 일단은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는 '19년도에 건립을 했고요, 건립 당시 취지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자기 진로를 결정할 수 있고 상담하는 그런 걸 주로 타겟으로 했고요. 하자 영등포 같은 경우는 4차산업보다는 기존사업들을, 기존에 전에 이름이 계속 직업체험센터였죠. 운영한 지가 거기가 한 10년 넘게 되고 있는데, 연세대에서 운영하고. 그런 쪽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야가 좀 다르죠.

〈000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0년이 전체적인 시설 운영 평가에서 98.7 정도 나와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운학원 같은 경우도 대학원에 청소년 전공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도 분명히 인정 받고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화곡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센터는 수영장이 없는 자립형이죠?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자립형인데 일단은 종합평가점수를 보게 된다면 '19년도에는 97.74가 나왔는데 '20년도에는 89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사업 운영실적에서 14점 정도에서 8점 정도로 굉장히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이라는 것이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좀 미진한 것은 아닌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 및 인력관리에서도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점수가 좀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지금 화곡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치상이나 주변 여건상 좀 열악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화곡을 포함해서 동대문이나 몇 개 시설이 좀 있는데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후에 일단 문래하고 마포가 있는데 문래하고 마포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거의 한 98점인데 '20년도에는 99점으로 거의 100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전체적인 종합결과 점수가 상승했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사업운영실적에서 일단 비대면이라든지 블라인드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잘 구축되어져 있고 잘 운영했다라고 하는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면 충분히 일단은 전체적으로 화곡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하는지 유추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부터 평가를 외부평가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마포나 문래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있는 시설인데요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청소년 이용률이 좀 낮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이용을 제한하다 보니까 성년 이용자들이 많이 안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청소년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오던 청소년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청소년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화곡이 못한다기보다는 마포나 문래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잘 나왔

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블라인드 방식에서 일단은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포, 문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시설 지금 다 명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문래는 최근에 위탁 받았고, 마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제시하고 있지만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금 명지전문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두 시설 다 자립자립형이지 않습니까. 수영장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보면 작년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수입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거의 보면 문래나 마포 같은 경우는 30억대에서 거의 5천만원, 4,400만 원대로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한 10~15%밖에 안 돼요. 그랬을 때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수영장이 있는 시설들이 타격이 더 컸습니다. 규모도 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수영장이나 이런 규모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반면에 그것도 또 인력도 계속 고용을 유지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올해에 걸쳐서 계속 인건비 부분이랑 그다음에 고정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지금 지원을 계속 따로 해 주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담당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제가 보면 노원 빼고 세 시설에 대해서는 조건부 적정을 쫓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실적보고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경우는 '19년, '20년 실적보고서를 통해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제가 제시 받았는데 세 시설 다 굉장히 높은 종합평가점수 결과를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적정에서 세 시설 다 적정으로 일단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시설 다 모두 적정입니다.

〈위원장〉

-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26번 안전은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27번 안전도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28번 안전도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29번 안전도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30〉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재계약)

〈위원장〉

- 30번 안건은 경제정책과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무형 재계약 건 심의 사항입니다.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십시오.

〈000 위원〉

- 위원장님, 잠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건국대학교 이현수 위원입니다. 금번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1번 안건이,

〈위원장〉

- 1번 안건은 이것 끝나고 다시 미진한 점 질의·응답 다시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마지막 것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위원장〉

- 예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 부서 관계자께서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경제정책과)>

○ 안녕하세요. 경제정책과 산학협력팀장 ○○○입니다.

<위원장>

○ 주심위원님은 ○○○ 위원님이십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읽어보면서 별다르게 궁금한 점은 없었는데요, 지금 이게 서울산
업진흥원이 수탁자이고 수탁자 선정방법이 수의협약인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공무원 (경제정책과)>

○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 성과평가결과는 굉장히 우수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서울
산업진흥원이 성과평가결과만 보면 계속 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어
떤 기관들도 혹시 알고 계신 바가 있는지. 이걸 경쟁을 하게 되면
혹시 이 산업진흥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지 여부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경제정책과)〉

-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에 따라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어 있고요. 산업진흥원은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특허청에서 서울지식재산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에도 맞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산업진흥원이 서울지역 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돼서 오래 기간 그 관련업무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고 해서 종합평가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맞은 것 같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서울지역 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000 위원〉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센터가 지금 2009년 이후로 계속 거의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 영역과 관련해서는 경쟁구도라고 하는 것은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우려스러운 점 빼고는 다른 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잘 해 오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질문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부서 관계자는 퇴장해주십시오.

<담당 공무원 (경제정책과)>

○ 감사합니다.

<위원장>

○ 주심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예, 당연히 걱정 의견입니다.

<위원장>

○ 여기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30번 안건은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1>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신규)

<위원장>

○ 이어서 마지막으로 첫 번째 안건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부서 담당자 입장시켜주십시오.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안녕하세요.

<위원장>

- 아까 ○○○위원님께서 집수리지원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까 여쭙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집수리지원단 쪽은 물론 저희 도시지원센터 안에 들어있기는 한데요 저희 부서보다는 저희 주거환경과에서 총괄을 하고 계셔서 담당하시는 분을 따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담당 공무원 (주거환경과)>

-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과에 담당주무관 ○○○입니다.

<위원장>

- 네, 반갑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주거환경과)>

- 네, 저희는 저층주거지에 대해서 주택성능개선구역으로 지정해서요 저희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조례에 의해서 집수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집수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해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그게.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담당 공무원 (주거환경과)>

○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사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는 민간위탁사무를 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근거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민간위탁으로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지요?

<000 위원>

○ 부서에서는 과장이나 팀장은 지금 나오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나요?

<담당 공무원 (주거환경과)>

○ 네, 저희 과장님이 투병으로 병가 들어가셨고요, 팀장님이 오늘까지 자가격리로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담당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000 위원>

- 아니요, 저는 괜찮고요, 좀 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지금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이 4가지를 가지고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 (주거환경과)>

- 네, 저희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게 어디에 이걸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게 있었나요?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방침에서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호로 한다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담당 공무원 (주거환경과)>

- 방침 내용에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

<000 위원>

- 민간위탁이 조례에 의해서 그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일반조례를 가지고서 지금 근거를 삼았다라는 게. 그리고 어디에도 지금 이 조항을 가지고서 민간위탁을 시키겠다라는 방침도 없다고 하면서 지금 문제 제기하니깐 이것을 가지고 지금 근거규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 (주거환경과)>

- 저희가 방침수립서에는 도시재생센터 내에 두겠다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요. 집수리지원센터라고 조례에는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집수리추진단인가요 지원단인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집수리지원단인가요 추진단인가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담당 공무원 (주거환경과)〉

- 네네.

〈000 위원〉

-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법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근거규정이 있어요. 집수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개별조례에 아예 없어요.

〈담당 공무원 (주거환경과)〉

- 네네.

〈000 위원〉

- 그리고 일반조례에 지금 4가지 이리이러한 것을 예시로 해놓은 것인데 이것도 집수리지원단을 위탁시킨다라는 방침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이걸 근거로 지금 민간위탁을 시키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담당 공무원 (주거환경과)>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담당 공무원 (주거환경과)>

○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더 마련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향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은 민간위탁의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민간위탁을 시킨다라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개별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민간위탁을 심의를 해준 사례가?

<위원장>

○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000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무부서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실무부서도 지금 이게 입법적으로 본인들이 조례에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사후적으로 개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위원장>

- 그런가요?

<000 위원>

- 부서 주무관님, 그 말씀인 거죠?

<담당 공무원 (주거환경과)>

- 네네.

<000 위원>

- 그런데 지금 조례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위탁을 부동의하게 되면 예전에 했던 것은 사실은 하자 있는 위탁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안 잡으면 앞으로도 또 이제 위법을 방치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위원님들이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예, 일단 부서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퇴장하시고요. 원래 주거재생과의 담당자 참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주거재생과 ○○○입니다.

<위원장>

- 혹시 ○○○ 위원님,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응답하겠습니다.

<000 위원>

- 회의 시간이 오래돼서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정말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위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점은요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1기 2기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1기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한 2년 6개월 되었고요, 2기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위탁 받은 기관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관련서류 보내주신 걸 보니까 이 기관에서 2021년 3월 23일 날 계약 해지를 요청하셨더라고요. 시간이 남아있는데 계약 해지를 요청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오늘처럼 저희가 시설위탁으로 민간위탁을

신규로 추진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탁업체가 사실은 계약기간까지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수탁기관에서도 민간위탁을 중간에 해지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해지 요청이 왔습니다.

〈000 위원〉

-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일단 계약을 했으면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도 져야 될 의무잖아요. 그런데 왜 중간에 이렇게 급하게 부랴부랴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계약 해지는 사실 계약을 중단하는 것이고, 만약 이게 서울시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라고 한다면 그게 계약서 약관상에 특별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 해지하기로 하고 따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안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간에 계약 해지하는 것은 굉장히 계약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일이고요. 나중에 서울시가 손해배상책임이나 이런 것을 질 가능성도 일반론으로서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시설형으로 바꾸신다고 하지만 일단은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시설형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당장 그날 그만둔다고 하셨던 건 아니고요,

자기들은 시설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은 어차피 민간위탁을 지금 신규로 다시 추진을 해서 위탁업체를 공모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침 그러면 우리도 다시 뽑아야 되니까 새로운 민간위탁이 선정될 때까지는 지금 현 업체가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000 위원〉

- 그러면 '2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기관이 계속 사무를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예예.

〈000 위원〉

- 그럼 2023년부터 신규,

〈담당 공무원 (주거환경과)〉

-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신규로 해도 좋다고 허가를 해 주시고, 또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이후로 공개모집을 하면 아마 내년 1월 달쯤에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지금 현 수탁업체에서 계속 업무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만 2022년 1월이라고 해도 당초 저희가 처음에 계약한 기간보다는 11개월이나 더 단축

된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업체에서도 수락을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000 위원〉

○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이 들었던 것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서울시 담당자분들께서 왜 계약을 중단해지 하면서까지 새로운 업체이걸 맡기려고 하는지. 설득력 있는 사유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제시된 게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성과평가표를 봤는데 77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수탁기관이 컨소시엄이잖아요. 주식회사 커런트코리아, 주식회사 역사만들기 컨소시엄인데, 이 수탁기관의 지식이나 기술, 전문성, 전문 역량 이러한 걸 보니까 평가에서도 2.5점 배점 중에 1.75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수탁기관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도시정비사업이건 도시재생사업이건 공간과 관련한 여러 사업과 관련해서 수행하신 실적이 전혀 없고요. 전혀 없는 기관이더라고요. 오히려 홍천군사를 편찬을 했다, 무슨 에코델타시티 홍보사업을 했다, 이런 사업내용을 보시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기관이 어떻게 이런 도시재생과 관련한 센터를 맡아서 하겠다고 선정이 되었나’ 의문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런데 더 의문인 것은 그래서 이런 전문성이나 역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제 눈에는 보이는데 이런 기관조차도 평가에서 지금 2.5에 1.7이라고 하는, 저 같으면 빵점을 줬을 것 같은데 점수를 그래도 좀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비상식적이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또 하나 여쭙볼 것이 이 사업 관련해서 2020년에는 거의 90억 정도 쓰셨고 '21년이 84억이고, 내년이 64억인가요? 제가 손으로 써 봐가지고. 하여튼 90억에서 84억에서 60억대로 팍팍팍 줍니다. 주는데 그 예산내역을 보더라도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좀 찬찬히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짧게 한다고 하고 저는 막 여러 가지 여쭙봐서 죄송한데요 궁금한 게 이게 진짜인데, 지금 도시재생법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있기는 한데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들거든요. 도시재생법은 살펴보면 이게 서울이나 경기처럼 인구가 팽창하거나 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이런 광역대도시를 전제로 한 게 아니고요 인구 소멸, 지금 이제 곧 문 닫아야 된다고 할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될 지방의 중소도시, 그래서 빈 집 늘어나고 도심도 황폐화되고, 그런 중소도시를 전제로 해서 만든 법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나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이 도시공간의 정리정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유형이 있고 그 사업유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결국 이 재생사업의 경우에도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에 맞춰서 지구지정 면적을 확정을 하고, 그 안에서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 지구지정이 몇 개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것보다도 저희 중점적으로 하는 저층주거지 근린생활형은 38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38개 지구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도시재생법을 보면 이게 결국 주거환경 노후화로 인해서 쇠퇴하는 도시지역을 전제로 한 것이라서요 이걸 서울시가 광역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사업이 아니고, 지구지정을 할 때도 면적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도시정비사업, 재건축·재개발 할 때의 그 사업면적보다 재생사업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작은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생사업은 결국 서울시가 광역적으로 할 성질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치구, 자치구도 지금 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강남, 서초, 송파가 다를 것이고 저기 노원, 도봉 이런 데가 다를 것인데 이걸 지금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다 균등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래서 저는 물론 도시재생법에는 서울시 차원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자치구 안에도 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치구가 먼저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규모가 작은 사업을 서울시가 왜 해야 되는 것이

죠?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일단 38개가 지금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38개는 다 구청장이 사업계획 수립권자로 돼 있고, 서울시에서는 선도사업으로 벌써 3개 지역을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자치구 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는 저희 서울시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자치구에 센터는 두지 않고 있고요, 38개의 현장마다 현장 센터를 두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자치구 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 지침에 봐도 현장 센터가 자치구 센터를 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자치구가 먼저 사실은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그걸 한마디로 틀어 쥐고 있는 것이잖아요.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그런데 위원님께서 서울시에는 도시재생지원사업보다는 재개발이나 그런 대단위의 큰 규모의 개발사업이 적합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000 위원>

- 적합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도시재생이 서울하고 과연 맞느냐라

고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점이고요. 서울 안에서 누가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겠느냐. 재건축·재개발 하려고 하지. 그게 하나 의문점이고요.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도시재생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초기의 발단이 뉴타운사업으로 해서 사업성이 없는 소규모의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의 출구전략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사업규모가 적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대부분 사업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너무 노후된 주거지를 그냥 방치하는 수는 없고 도시를 범죄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처음 도시재생지원사업이 시작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0 위원〉

- 네, 그런데 아마 이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도 자치별로 굉장히 큰 편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 이해는 도시재생법 충실하게 따라가려면 서울시가 이것을 틀어 쥐고 있으면 안 되고 자치구한테 맡겨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논의하셨던 것 같은데 이 집수리지원센터라고 하는 것, 조례를 살펴봐도 이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만 마지

막으로 여쭙보면 이 위탁을 공개모집으로 해서 다시 사업자를 모집을 하게 되면 과거에 했던 이 커런트코리아하고 역사만들기 컨소시엄이 다시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 (주거재생지원과)〉

-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평가에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학술이나 이런 도시재생 쪽에 좀 우수한 기관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것이나 공공기관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또 그 기준을 보면 3년 이내에 그런 수행실적, 이런 재생사업의 지원센터 같은 걸 운영했던 실적을 중요하게 보니까 지금 기준에 하셨던 제가 실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업체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민간위탁 주신 여러 건 봤습니다만 이 건은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서울시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집수리 지원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집수리 지원을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설령 조례상에 근거를 만든다 하더라도 집수리 지원을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한다는 게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CRC 육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실체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현장전문가 육성하고, 그다음

에 마을기업 창업, 이게 도시재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센터의 사무 중에 하나인데 지금 기존에 이 업체가 했던 기업 육성을 보면 이게 마을기업인가요? 아닌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기업을 기르겠다는 것이지 도시재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셨던 이 기관이 도대체 뭘 하신 건가. 되게 이상하다. 저는 이 사업은 계속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 의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 네, 지금 시간이 너무 경과돼가지고.

〈000 위원〉

○ 죄송합니다.

〈위원장〉

○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하기는 지금 사업을 몇 년 동안 해왔고, 지금 정권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업이었고, 내년 선거가 있으면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000 위원〉

- ○○○ 위원입니다. 주심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왜 중간에 이 위탁 업체가 그만두려고 했는가. 담당부서의 팀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위탁업체하고 직원들 간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가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이제 위탁 해지 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당장 사업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 좀 더 해달라라는 취지로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그 프로세스로 가지 않을까.

〈위원장〉

- 그래서 주심위원님 먼저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저는 일단 이 사업의 위탁사무의 내용이나 또 그동안 기능을 수행했던 인력의 성질이나 또 예산편성 내용이나 굉장히 다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면적으로 다시 좀 짜와 봐야 된다. 그래서 부적정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요,

중단을 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계속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까 그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집수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근거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옛날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지. 옛날에 처음 할 때는 이 집수리사업은 원래는 포함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나중에 들어온 사업 같은데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이런 경우는 가끔씩 발생하는 경우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 자체는 위탁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위탁의 근거가 있어가지고 위탁을 받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원칙을 잘 지켜서 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비슷한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 센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센터 그건 별도로 위탁을 받고, 센터 운영을 별도로 위탁 동의를 받고, 또 하나는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또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이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근거를 가지고 집수리사업이 갖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주체가 똑같다는 이유로 이런 경우에는 그 센터를 운영하는 업무 속에 이것이 포함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관련 법령에 보면 결국은 절대로 저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 할 수 있는

업무에 집수리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분명하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가 결국 부서 입장에서 아주 그나마 선회를 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센터가 하는 시장이 정하는 사무, 이런 것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거의 물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위원회에 심의를 올리지 않고 이렇게 사업이 추가됐다가 나중에 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것이 걸려져서 시정이 된다면 과거에 위원회의가 부실한 심의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거의 크지 않다. 저는 운영자로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00 위원〉

-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님. 지금 이것만 좀 하나 확인해 볼게요.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위탁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위탁 자체가 위탁할 수 없다는 데 근거가 있는 경우,

〈000 위원〉

- 기본조례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나, 아까 청년공간처럼 시장이 ‘공간을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공간은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다 개별조례에 민

간위탁 할 수 있다라는 게 되어 있는데 집수리지원센터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는 게 없어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없습니다. 맞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위탁을 할 수 있나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000 위원>

○ 그다음에 아까 4조 3호를 얘기하던데 4조 3호 뒤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몇 조냐 하면 여기 밑에 가서 보면 민간위탁사무 내용 6조 해가지고 노인, 장애인, 여성, 산업지원, 영어마을 운영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에도 집수리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000 위원>

○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마무리지으시겠지만 아까 주심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면 시정운영 철학부터 들어가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건 위탁하되 제 생각은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부분은 집수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어떨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집수리지원단을 도시재생센터에 붙여서 별도사무로 위탁 심의도 받지 않고 위탁할 수 있는 건지. 위탁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와 방침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검토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조건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 그러면 집수리지원단 사업의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조건으로 통과시키는 걸로 적정으로 하는 걸로 할까요?

〈000 위원〉

- 그런데 지금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계속 들었는데 잘 안 들려서 잘 못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주심위원님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떠나서 저는 예산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균특회계에서 나오는 게 있고 서울시가 균특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으로 포장이 돼 가지고 변질이

되는 그런 사업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심위원님이 검토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걸 민간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2020년도에 국비 나온 걸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해방촌도시재생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가리봉도시재생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 보니까 국비사업들이 많이 늘어났고, 사실은 또 2021년도에 보니까 국비 없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 뉴딜도 붙이고, 빈집 매입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계속 늘어나면서 아까 민간위탁이랑 연관이 되게 되면 이 사업이 아까 주심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그런 점들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 더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 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000 위원〉

- 저는 주심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좋지 않나.

〈위원장〉

- 그러면 사업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000 위원〉

- 사업을 주심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한번,

<위원장>

- 부적정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중단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000 위원>

- 그런데 위원장님, 중단이라고 해서 영구중단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시의적절하고 예산이나 인력이나 모든 측면에서 적절하게 법적 근거까지 갖추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부적정 의견이면 사망선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 현실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중단을 시키면 큰 혼란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이면 여기서 스톱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좀 저희가 무리한 결정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이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로 분류가 되어 있던데요.

<위원장>

- 신규지만 이게 사무에서 시설로 갔기 때문에 신규로 분류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재위탁입니다.

<000 위원>

-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냥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그냥 조건부 적정이라고 하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사소한 결까지 몇 개만 잘 가다듬고 고치면 쪽 가도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 아닌가요? 그런데 법적 근거도 그렇고 인력이나 예산이나 모든 면이 저는 합당치 않아 보이는데 그냥 이걸 조건부 적정으로 하기가 제가 마음이 선뜻 이렇게 동하지가 않네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께서 합의제 기구니까 결정해 주실 텐데요 저 주심위원 의견은 부적정이었다고 기재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들 한번 의견 말씀해 주세요.

<000 위원>

- 제가 이걸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뭐한데요. 주심위원님 의견도 그렇고 ○○○ 위원님 의견도 그렇고, 또 위원장님 의견도 그렇고 하니까 재심의할 수 있지 않나요?

<위원장>

- 예, 보류는 할 수 있습니다.

<000 위원>

- 보류해서 다시 재심의하는 걸로 이 안건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되는 건 정리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사업이 또 계속 해나가야 할 사업은 또 해나가야 되고. 그래서 한번 재심의하는 건 어떠십니까?

〈위원장〉

- 이게 전체 의회 일정하고 관련해서 이건 어떤가요? 만약에 보류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소관 국장이나 본부장하고 통화를 할 테니까 조금만 더 논의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통화를 하고 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000 위원〉

-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저도 이게 주심위원이 검토한 만큼의 검토가 안 돼서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주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고, 원래 사실상 유사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재위탁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는 신규사업이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부적정으로 해서 기각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그 사업 형태는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 사업이 아직 기간도 끝나지 않았다면서요. 그렇게 제가 들었었는데, 그러면 그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사업기간 동안 사업 전반에 관해서 재검토를 해서 법적 근거라든가 타당성을 한번 더 고려한 다음에 하고. 형식적인 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적어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걸 부적정으로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사업에 영향을 일단은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위원장〉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쪽에서 계약 해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것은 12월 말로 예산을 못 받으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거기 직원들이 정규직 42명, 계약직 10명이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죠. 사업은 계속 되지는 않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바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000 위원〉

- 제가 지금 나가야 돼서 의견 잠깐만 말씀드리고, 계속 제가 시계 보고 있다가 지금 그러는데요. 저도 주심위원 의견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의 연관성 부분에서 자신있게 뭐라고 제가 검토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저는 다음 번에 재심의를 해서 저희

들도 조금 검토를 하고, 지금 주심위원만큼 아무도 아마 안 봤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바로 부적정 얘기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 연결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 다음 회차에서 재심의를 다시 논의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죄송하게도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는 저도 심의 보류를 하고 다음에 논의하는 게 걱정인 것 같은데 지금 전체 의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또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통화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통화 결과를 보고 저희가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3분 정도 설까요?

〈000 위원〉

- 잠깐 제가 얘기를 하다 끊겼는데, 이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부적정 하면 사업이 중단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도라는 게 걱정도 있고 부적정도 있고 조건부가 있으면 부적정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못 한다면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전이 올라온 게 굉장히 적절하게 형식은 갖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안전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는 적어도 형식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

고, 재검토라는 것은 뭘 재검토할 수는 없죠. 한 번 결정한 걸 재검토할 수는 없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한다면 재검토가 아니고 오늘 결정을 하지 않고 보류해서 다시 심의를 연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이것은 그냥 종결을 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서 뭘 다시 검토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을 안 하거나 다음에 결정하거나. 다음에 결정하는 걸 굳이 재검토라고 하신다면 재검토가 되겠습니까마는 오늘 제 생각에는 이게 이번에는 사실은 자료를 저만 안 받았는지 주심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받지를 았아가지고 미처 못 봤는데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심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000 위원〉

-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되는 게 지금 이 사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결국 42명의 정규직, 그리고 10명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이 수탁기관 자체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해서 들어오게 된 건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 수탁기관의 고용 문제는 저희가 걱정해야 될 요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관 스스로 안 하겠다고 지금 해지를 요청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분들의 고용을 왜 고려요소로 삼아야 하는지라고 하는 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위원장〉

-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 사업은 서울시만이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도 하고 경기도도 하고,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금 현 정부의 중요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해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만의 사업이라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 끝날 때까지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에서 마무리해 줘야 될 그럴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중단해 버리면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000 위원〉

- 그런데 기관에서 먼저 안 하신다고 했다면서요.

〈위원장〉

- 이것은 어차피 서울시 사무니까요 서울시가 책임지고 이것은 마무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은 기관의 그런 의견일 수도 있고요.

〈000 위원〉

- 위탁 받아서 사무 수행하던 기관이 책임성도 없이 중간에 1년이나 기간이 남아있는데 자기네들이 먼저 어떤 내부적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해지를 요청했다고 하면, 그런데 서울시가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계속해라 하고 그 기관에다 연장을 해 주든가,

〈위원장〉

- 그 기관에다가 해라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무 자체는 필요하니까 새로 공모를 해서 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현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000 위원〉

-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이니까 제대로 잘 다시 계획을 수립해 와라,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해야 되는 게 역할이 아닐까요?

〈위원장〉

- 물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게 시의회,

〈000 위원〉

- 위원장님, 그런데 경기도라고 하셨는데 경기도 본청은 이 도시재생 들어가는 게 균특밖에 없어요. 도비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인천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2021년도 사업을 보고 있는데요 인천도 그렇게 금액이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서울시만 지금 977억이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 서울시가 특별히 규모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도시공

사에서 조그맣게 하고,

<000 위원>

○ 아, 그쪽으로 나갔군요.

<위원장>

○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없는 건 아니고요.

<000 위원>

○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거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심의해서 의결할 역할과 권한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 건에 대해서 또 다시 일정을 잡아서 협의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양해를 하신다면 저는 보류해도, 그러니까 이후에 추가자료 보완해서 다시 의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본인들이 신규라고 올려놓고 그것을 우리가 이전 신규사업으로 적정하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중단된 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기가, 저도 사실은 솔직히 주심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들 정확히 100%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신규로 올려봤다면 저희가 신규에 따른 판단을 하면 되지 기존사업의 연속성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러했다면 신규로 올리지 지 말았어야죠. 재위탁으로 올렸어야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30분밖에

안 걸릴 것이니까 저도 그런 시간적 여유 할애는 할 수 있고요. 저는 그 의견 드립니다.

〈000 위원〉

- 여기서 신규로 또 다시 공개모집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수탁을 받아서 운영했던 어떤 업체 자체가 일단 중간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일단 신규라는 형식을 뒀 것 같고요. 지금 ○○○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감은 하되 이 사업이 또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연장선상에서 조금은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적되어진 부족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추후 다시 보완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00 위원〉

- 동의합니다.

〈000 위원〉

- 담당 과장하고 좀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 과장은 난처한 입장인 것이죠. 어떤 부분이나 하면 현재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수탁업체가 당초 10월에 철수하려고 했다가 12월까지는 맡아주겠다라고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동의를 돼줘야만이 내년 새로운 업체를 뽑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지연되고 혼란이 있

을 수 있다는 애로점을 얘기합니다. 행정 하는 입장에서 아까 주심 위원님 말씀,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사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위탁을 하는 것은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대신에 아까 주택수리지원단, 여기 문제는 별개로 하고요. 그래서 기능이랄지 인력이랄지 예산이랄지라는 부분은 조정을 하는 조건, 이걸 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은 조건부로 동의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 또 의견 말씀해 주시죠.

〈000 위원〉

○ 저는 한 번 더 보류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네, 또 다른 위원님들.

〈000 위원〉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좀 자세하게 보고 담당부서의 의견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나

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지금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약간은 명칭도 바뀌고 전체적으로 틀은 바뀌었지만 그 안에 연속적인 사업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포맷과 근거를 확실히 해서 다시 한번 일단 안전 상정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 대다수 위원님들 의견이 오늘은 심의 보류 하는 게 낫겠다는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날짜를 한번 잡아가지고 사업의 소요인력이나 사업비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리하고 모든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안전은 심의 보류로 의결하겠습니다.

〈000 위원〉

- 저는 한 가지, 혹시 인천에서 또는 경기에서 유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만 좀 봤으면 이 위탁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을 갖지 않을까.

〈위원장〉

- 그러면 다른 광역자치단체 사례도 같이 자료로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부서에 일단 말씀을 드려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게 위원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오늘 마치는 대로 일정과 관련해서 되는 문제라서 간사가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의회의 제출 일정이 거의 빠듯하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에 이게 이번 의회에 새로 신규로 동의를 받고자 한다면 요 며칠 내로 저희들 심의 일정이 다시 잡혀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의회에 따라서 제가 며칠이라고 뚜렷하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의회와 협의를 위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excuse가 돼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한 건만으로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날짜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독방이나 통해서 연락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전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4시간 넘게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1분, 폐회】